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학교재난 실무 행동 매뉴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재난예방과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목 차

I.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1. 학교 재난사고 대응	3
2. 경기도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6
별지. 1) 재난보고 체계도	12
2) 자연재난대비 대책본부 운용(예시)	14
3) 자연재난 상황관리 비상근무자의 임무 및 근무요령	15
4) 상황근무 보고(서식)	16
5) 자연재난_재난상황보고서(서식)	18
6) 인적재난_화재발생 상황보고서(서식)	22
7) 인적재난_승강기피해발생 상황보고서(서식)	24
8) 재해복구경과보고서(서식)	26
9) 재해복구결과보고서(서식)	27
10) 도, 시·군 재난상황통보서(서식)	28
11) 등·하교 시간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	29
12)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신청절차	30
13) 기상특보별 국민행동요령	32

II. 교육시설 방재관리

1. 풍수해 (태풍·호우)	39
2. 설해 (대설)	45
3. 한파	49
4. 지진 (지진해일)	51
5. 화재 (폭발)	54
6. 승강기사고	58
별지. 1) 풍수해 행동요령	62
2) 설해(대설) 행동요령	62
3) 한파 행동요령	63
4) 지진(지진해일) 행동요령	64
5) 화재(폭발) 행동요령	65
6) 화재대피훈련 운영매뉴얼	67
7) 승강기사고 행동요령	80

Ⅲ. 교육시설 안전관리

1. 시설물 안전관리	83
2. 전기시설 안전관리	86
3. 소방시설 안전관리	90
4. 가스시설 안전관리	94
별지. 1) 교육시설물 안전점검대장(서식)	97
2) 여름철 안전점검대장(서식)	101
3) 겨울철 안전점검대장(서식)	102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대장(서식)	103

Ⅳ. 안전점검의 날 추진

1. 안전점검의 날	109
별지. 1) '안전점검의 날' 월별 주요실천과제	112
2) 소방안전체험관·이동안전체험차량 현황	113
3) 분기별 '안전점검의 날' 추진결과(서식)	116
4) 연도별 '안전점검의 날' 추진결과(서식)	120



매뉴얼 활용 방법

I 매뉴얼 제작 목적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교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교 및 교육지원시설 관리자의 책무와 역할을 지정,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시설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도모하기 위함

II 매뉴얼 적용 범위 및 활용

- 『풍수해·설해·한파·지진·화재·승강기사고』 발생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 파일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http://www.goe.go.kr> → 과별누리집 → 재난예방과 → 과별자료실 클릭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I.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I 학교재난사고 대응

① 재난 발생시 중점사항

1

냉정하고 의연한 대응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대응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대응

2

관리직의 리더십

관리직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강한 리더십 하에 정확한 지시를 한다

3

정확한 정보수집 및 정보의 공유

현장에 있던 교직원·학생들이 정확히 파악한 정보를 정리하여 요점을 문장화 하고 → 교직원간에 정보의 공유를 꾀한다

4

조직적인 대응

대책본부에서의 결정사항이나 관리직의 지시를 신속히 교직원에게 전달, 학교전체에서 조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

5

교육청과의 연계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에 신속히 상황보고 및 직원 파견을 요청한다

6

관계기관의 연계

경찰·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을 받는다

7

보호자·지역사회와의 연계

보호자에게 신속, 정확하게 정보제공하고 → 지역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안전확보 및 원활한 교육활동을 도모한다

8

통신수단의 확보

재난에 의한 통신망의 파손이나 보호자, 보도기관 으로부터 문의 쇄도 등에 의해 학교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휴대전화나 전자메일, SNS 활용 등의 비상용 통신수단을 미리 확보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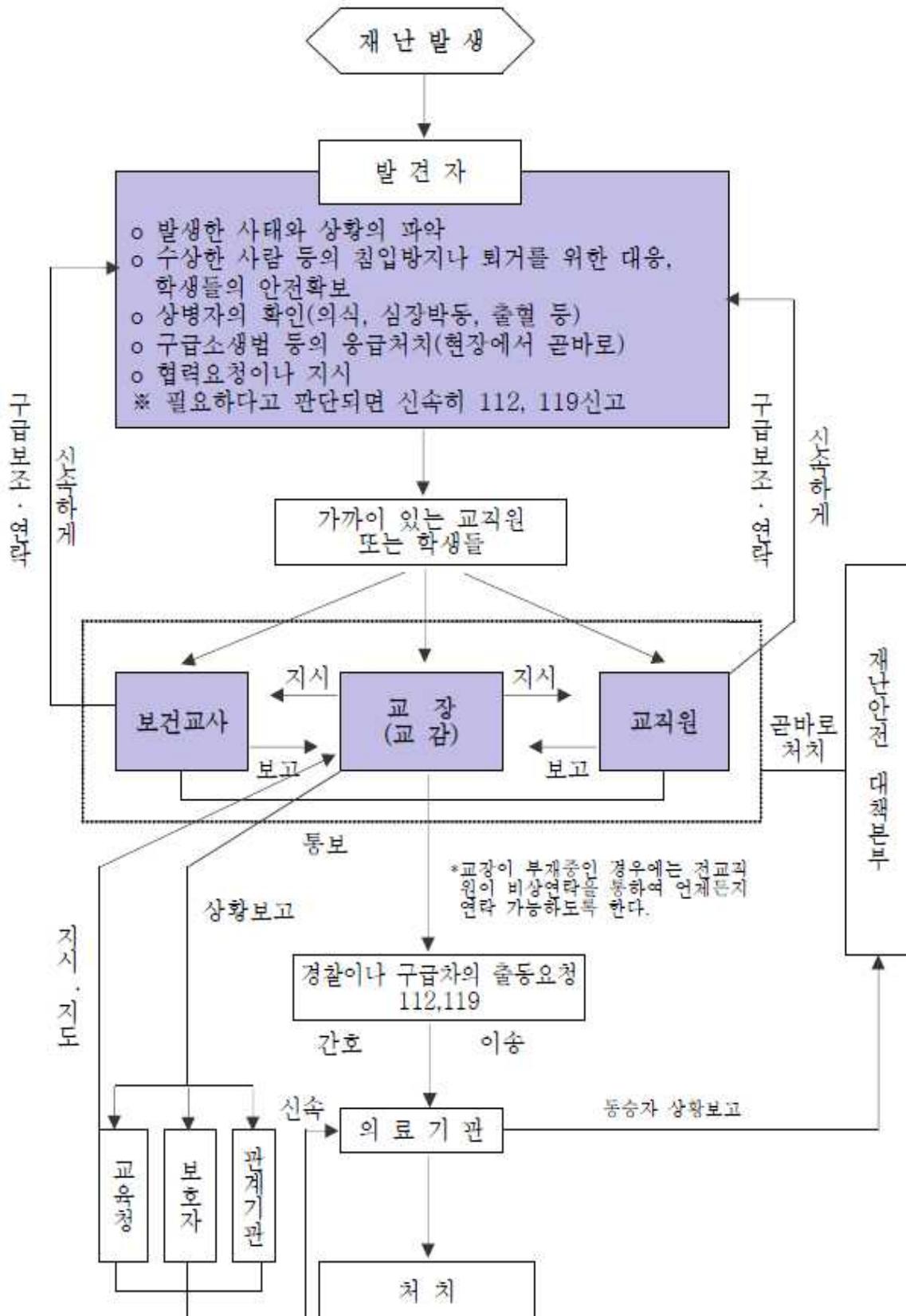
9

보도기관에의 대응

관리직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교육청과도 연계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한다

② 재난 발생시 학교대응 체계도

※ **각급학교별 「안전책임관(교감)」 및 「방재재난담당자(행정직원)」 지정**
학기초 구성원들의 비상소집체계 및 업무분장 정비



③ 재난 발생시 학교 구성원의 임무와 역할

구분	실무자	역할
최초 발견자		- 119신고 및 생존자 구호조치, 사고현장 보존 - 학교장(인솔책임자) 보고
대책반장	학교장	- 학교 사고대책반 운영·총괄 - 사안 논의 및 사고처리안 결정(해결방안 지시)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사고 통지
대책부반장 (안전책임관)	교감	- 학생사안발생시, 사고대책반 운영(교육청 보고) -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
현장대응팀	학년부장의외	- 구호조치 및 병원후송, 보호자 연락 - 최초 사안 조사 및 정보수집(현장방문)
교내지원팀	교무부장의외	- 비상연락, 학생현황 파악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협조체제 구축
행정지원팀	행정실	- 기상·재난정보 수신 및 전파 - 자연재난 및 화재에 따른 재해발생시, 재난상황보고 - 물적 피해 현황 파악 및 복구 - 학생 귀교 대책(이동수단 확보) 수립 -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④ 재난안전 관련 행사 내실화

구분	시기	주요내용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안전교육, 소방훈련, 비상사태별 비상근무인원 및 근무요령 숙지 재난취약분야 일제점검, 교육시설 정기점검 ※ 별지III-1
방재의 날	매년 5월 24일	방재의식 고취 홍보·교육
민방공대피훈련	연 4회	민방공대피훈련
안전한국훈련	매년 4~5월중 (3일간)	재난대응 종합훈련

⑤ 재난안전 교육 강화 및 홍보

- 각급 학교에서는 재난안전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주기적인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 안전관리 관련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 가정통신문 발송 및 홈페이지 탑재

재난안전 관련기관 사이트 (자료실)

- 소방방재청 NEMA TV (<http://www.nematv.com>)
- 안전행정부 튼튼안전 대한민국 (<http://snskorea.go.kr>)
- 국가재난정보센터 (<http://www.safekorea.go.kr> /재난통계자료실)
-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재난안전교육포털 (<http://portal.cdi.go.kr>)

⑥ 정부 재난안전정보 포털 APP ‘안전디딤돌’ 설치하기

- 교육기관 전 교직원 및 학생 ‘안전디딤돌’ APP 설치, 활용하기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

자료내용	11개 기관 15개 재난안전정보를 통합·연계한 종합 재난안전정보서비스 앱 재난신고, 재난뉴스, 기상정보, 재난문자 서비스,
자료 내려받는 곳	Play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안전디딤돌’ 로 검색하고 다운로드

II 경기도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1)

1)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도



1)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229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집행계획)」,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종합계획 및 위기대응매뉴얼 준수

② 상황관리 체계(국가위기별·기상 특보별 4단계로 구분하여 운영)

구분	위기단계 ²⁾	기상단계	근무기준	주관부서	세 부 내 용
준비	평시		◦ 상시운영체제	재난예방과	《 주관부서 책임으로 재난 징후 감시 》 • 근무시간 : 09시부터 18시까지(평일) - 전기관 상황전파시스템(소방방재청) 가입, 안전담당자 기상정보 수신 및 전파 - 기관별 구성원들의 비상소집체계 및 업무분장 정비
			사	관심 (Blue)	1단계
비상	주의 (Yellow)	2단계	◦ 기상특보(주의보) 발효		
			체	경계 (Orange)	3단계
계	심각 (Red)	4단계	◦ 경기도 전지역에 대규모 피해 예상시 또는 피해 발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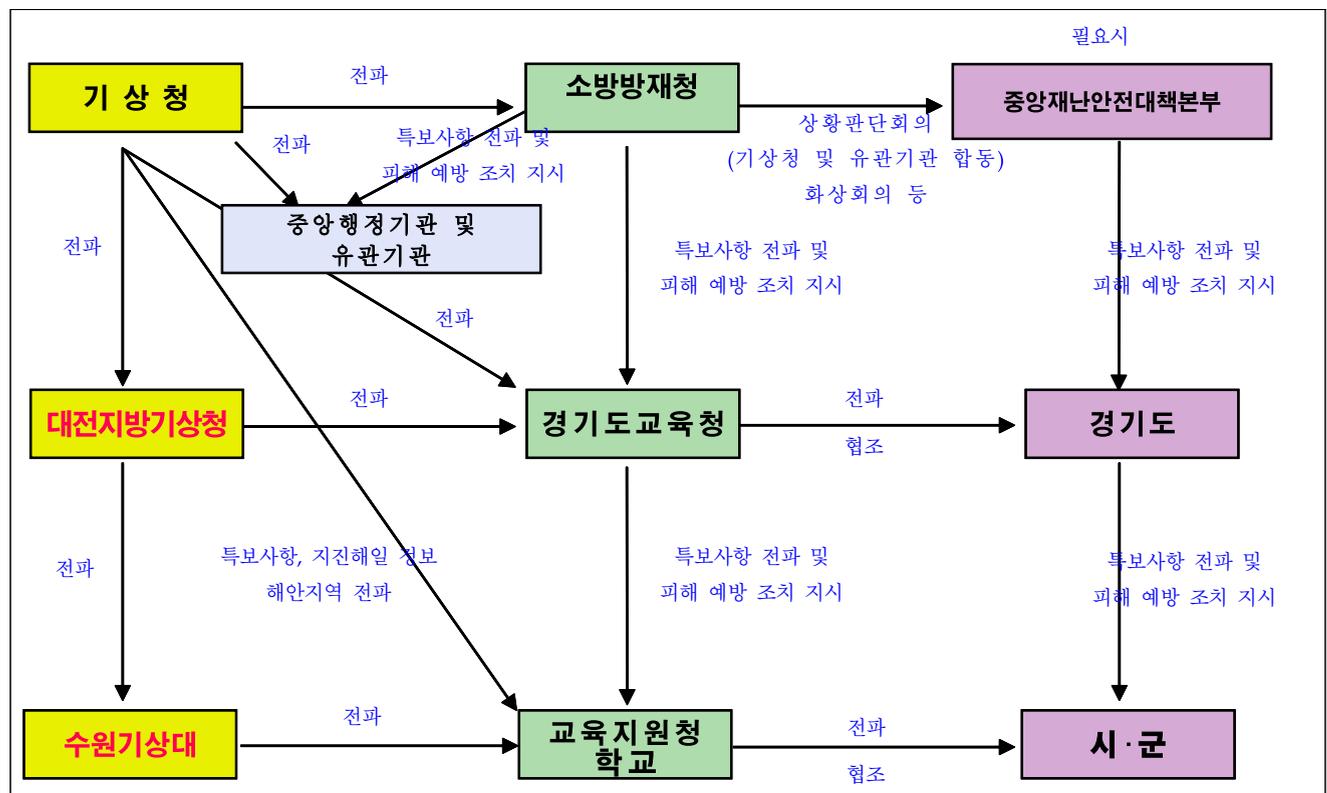
2) 풍수해·대설·지진 등 재난위기경보는 상황에 따라 순차에 관계없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발령 가능하며, 기상청 특보 발효에 따라 단계별로 계획적인 대피 방안 자체수립

3) 재난대비 상황관리체제 상시운영 ※참고. 대책본부 운용 [별지 2], 상황관리 비상근무자 근무요령 [별지 3], 상황근무 보고서 [별지 4]

기상특보 발효기준 기상청에서 아래기준에 의거 발령

종류	주 의 보	경 보												
호우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태풍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이상, 또는 강수량 이 100m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3급</th> <th>2급</th> <th>1급</th> </tr> </thead> <tbody> <tr> <td>바람(m/s)</td> <td>17~24</td> <td>25~32</td> <td>33이상</td> </tr> <tr> <td>비(mm)</td> <td>100~249</td> <td>250~399</td> <td>400이상</td> </tr> </tbody> </table>	구 분	3급	2급	1급	바람(m/s)	17~24	25~32	33이상	비(mm)	100~249	250~399	400이상
구 분	3급	2급	1급											
바람(m/s)	17~24	25~32	33이상											
비(mm)	100~249	250~399	400이상											
강풍	◦육상에서 평균풍속 14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0m/s이상 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의 경우 풍속 17m/s이상 또는 순간풍 속 25m/s이상 이 예상될 때	◦육상에서 평균풍속 21m/s이상 또는 순간풍속 26m/s이상 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의 경우 풍속 24m/s이상 또는 순간풍 속 30m/s이상 이 예상될 때												
풍랑	◦해상에서 풍속 14m/s이상 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 나 유의파고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해상에서 풍속 21m/s이상 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 나 유의파고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폭풍 해일	◦천문조폭풍 등으로 해수면이 상승발효 기준값이 다음이상 - 김포 994cm, 안산시흥 940cm, 평택화성 1010cm	◦천문조폭풍 등으로 해수면이 상승 발효 기준값이 다음이상 - 김포 1010cm, 안산시흥 960cm, 평택화성 1030cm												
지진 해일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 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때 - 진도기준(지진 4~5):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수준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며, 약간의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짐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 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 고 1.0 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때 - 진도기준(지진 5~6): 잘 설계된 구조물은 기울어지고 실제 구조물에는 큰 피해가 발생되며 부분적으로 붕괴됨.												
대설	◦24시간 신적설이 5cm이상 예상될 때	◦24시간 신적설이 20cm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한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때 ②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예상 ③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10월~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예상 ③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기상정보 전파 흐름도 (기상청 → 교육청 기관당 5명 수신자지정)



③ 재난상황 및 보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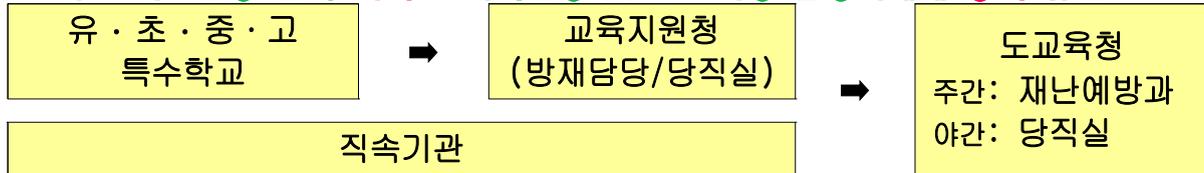
1. 중요재난상황 보고기준⁴⁾

- 사망사고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이상) 또는 부상자 20명이상 발생한 재난 및 사건 사고
- 학교현장에서 자연재난(풍수해, 설해, 한파, 지진)으로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의 화재, 폭발, 승강기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재난수습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사망사고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2. 재난상황보고 요령⁵⁾

 자연재난(풍수해·설해·한파·지진), 화재, 승강기 사고 발생시

최초 사고발생 인지 즉시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동시 유선보고



평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재난예방과 방재재난관리담당 820-0727~8(Fax 820-0749)
야간·공휴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당직실 820 - 0514~0524 유선 보고

3. 보고시기 및 방법 [3단계 보고]

구 분	보 고 시 기	보 고 사 항	보 고 방 법
① 발생보고	• 풍수해·설해·지진, 화재, 승강기 등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 발생 파악 즉시	• 재난상황보고서 내용 【서식: 별지 5호】 ※ 화재발생보고 【별지 6호】 ※ 승강기사고보고 【별지 7호】	• 담당자에게 유선보고 ※ 문자송신 병행
	• 재해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일 (1일 2회) 보고 - 09:00 기준 10:00 까지	• 재난상황보고서 【서식: 별지 5호】 학교현황, 사진 첨부	• 담당자에게 메일보고
	- 20:00 기준 21:00 까지	• 재난상황보고서 【서식: 별지 5호】	• 담당자메일보고 • 공문시행
	• 재해 피해액이 3천, 복구소요액이 5천인 경우, 도·시 재해대책본부 재해통보	• 도·시·군 재해대책본부 통보 【서식: 별지 10호】	• 공문시행
② 복구진행	• 피해복구 추진사항보고 (피해발생후 5일 이내)	• 재해복구경과 보고서 【서식: 별지 8호】	• 담당자메일보고
③ 복구결과 보고	• 복구 완료후 5일 이내	• 재해복구결과 보고서 【서식: 별지 9호】	• 공문시행

4) 정부의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중요재난 상황보고기준이며, **사망자 1명이상 발생시 교육청 즉시보고** 또한, 중요재난상황은 아니지만, (풍수해, 설해, 한파, 지진, 화재)에 의해 학교시설의 피해가 심대한 경우 「OO에 따른 피해상황」으로 【별지 6】 서식에 준하여 상황보고. 언론(지방지이상) 보도시 보도사항 첨부 ※

5) 각급기관은 중요재난 사고 발생 인지 즉시,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담당부서에 피해상황 동시 즉시보고**

(행동지침. 피해발생시 **학교는** ①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유선보고, ② 도교육청 담당자에게도 유선보고(문자송신병행) ③ 「재난상황보고서」 교육지원청 제출【별지 5】 ④ 재해복구경과 보고【별지 8】 ⑤ 복구결과 보고【별지 9】
교육지원청은 ①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즉시유선보고, ② 현장점검 ③ 학교의 「재난상황보고서」 검토, 취합 및 교육지원청 조치사항 추가하여 도교육청에 보고【별지 5】 ④ 재해복구경과 보고【별지 8】 ⑤ 복구결과 보고【별지 9】

※ 재난피해발생 인지(認知)를 근무시간이후에 한 경우,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담당자 핸드폰으로 즉시보고 및 문자송신병행

※ **사전에 각기관에 맞는 보고체계 정비 및 직원교육, 기관별 재난대책본부 또는 당직실 “보고체계도” 비치활용【별지 1】**

4 재난상황 정보공유체계 구축

1. 기상청 기상정보 수신(교육지원청, 도교육청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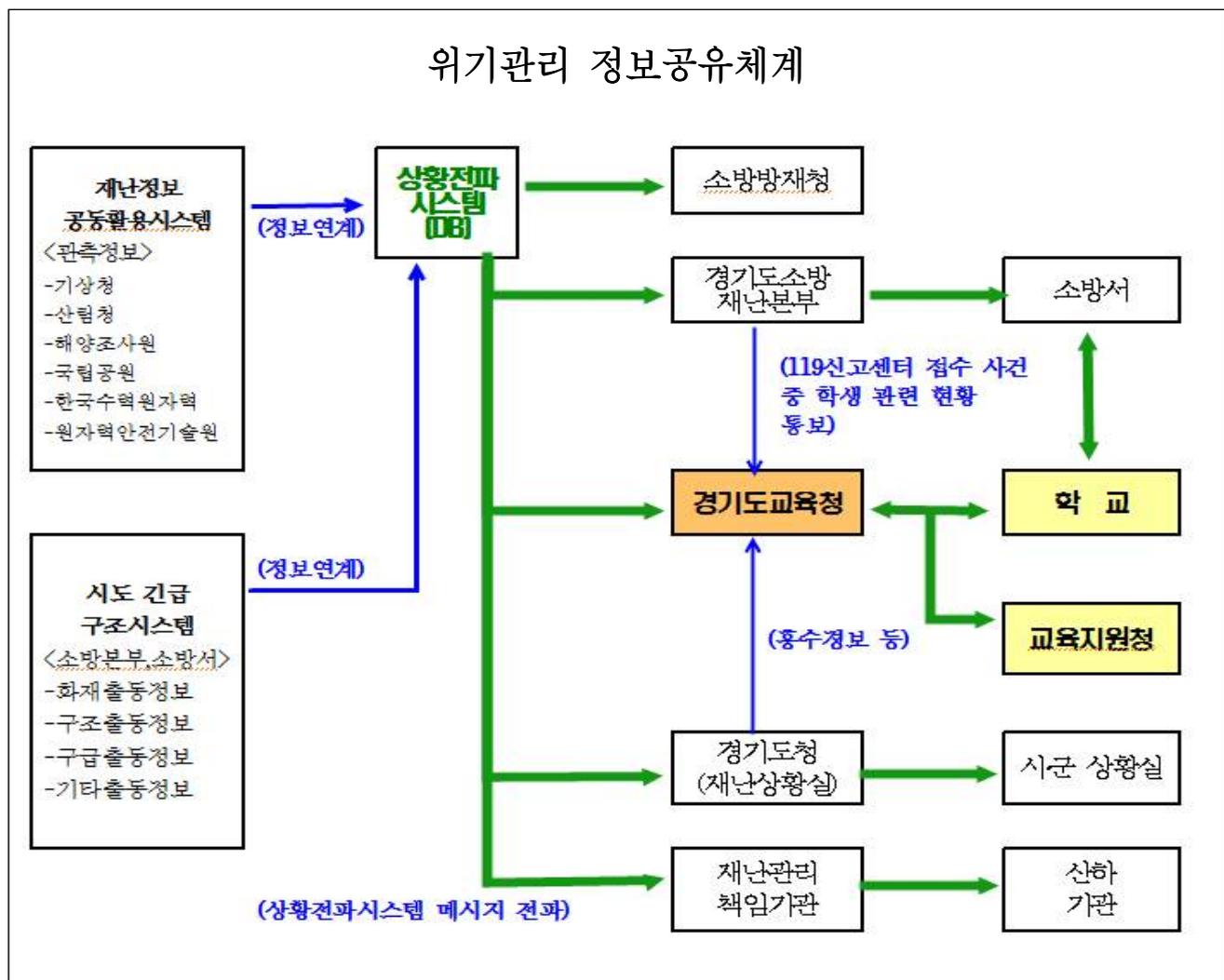
- 문자통보(SMS) :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 제공. 기관별 5명이하
- 스마트통보(EDIX) : PC기반의 기상정보통보프로그램으로 해당 특정보 발생 시 사용자의 PC에서 팝업, 알림서비스 제공. 기관별 1명

☒ 다운로드 주소 : <http://www.edix.net/edix/down>

2. 소방방재청 기상정보 공유

- 소방방재청에서 구축하여 지자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정보 공유

☒ 다운로드 주소 : <http://www.safeworld.go.kr>에서 메신저설치프로그램 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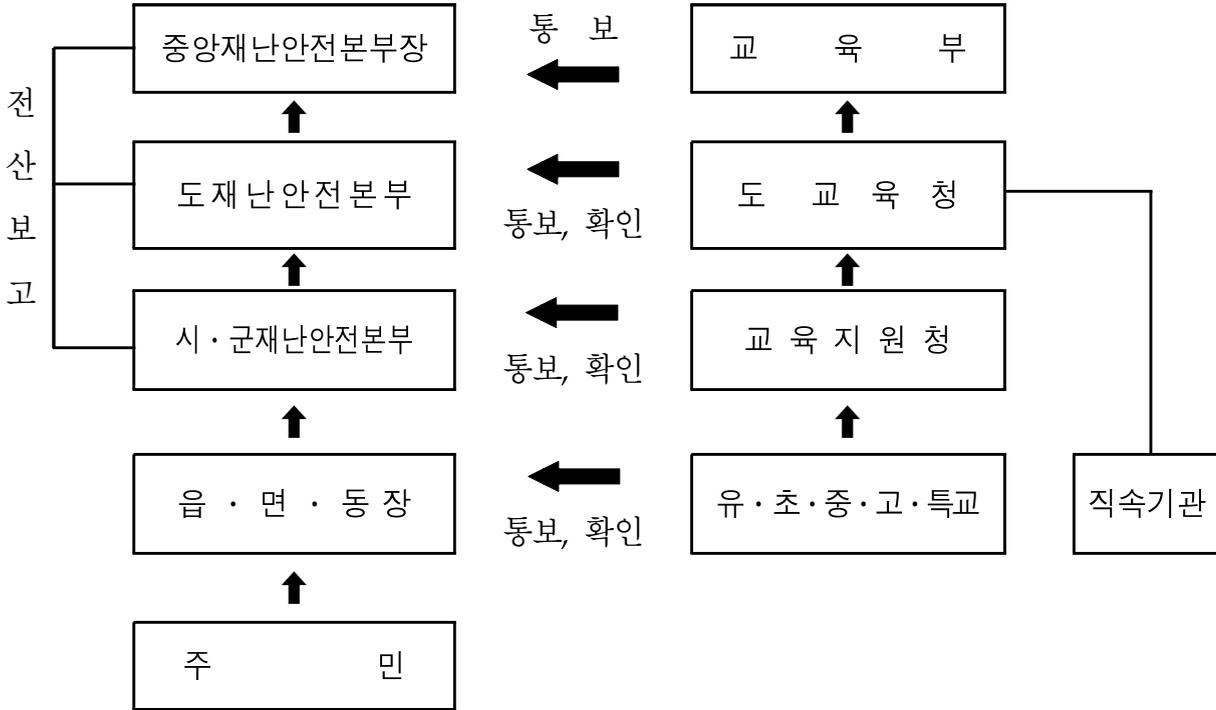
5 재난피해 발생 보고 및 복구 지원 체계

<p>1. 재난피해 발생</p>	<p>피해기관 및 교육지원청</p> <p>① 피해기관(유·초·중·고·특수·직기) ⇒ 피해현황 파악 및 초기 복구 및 방재 조치 실시 ⇒ 최초 사고발생 인지 즉시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동시보고 ⇒ 학생 안전보호조치 ※ 참고. 등·하교 시간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별지11】</p> <p>②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에 피해상황 즉시 보고 ⇒ 재난담당자 피해기관 현장점검하여 피해상황 확인 (교육시설담당: 피해액 산출 협조지원)</p>
<p>2. 피해상황 보고</p>	<p>교육지원청</p> <p>① 피해학교에 비상조치 지시 ② 피해상황 신속하게 파악 재난상황보고 (재난상황발생, 재해복구경과, 복구결과 3단계 보고)【별지5,8,9】 ③ 재해·재난발생 비상근무 실시 및 시설비, 예비비 등을 활용한 긴급 복구</p> <p>도교육청 (재난예방과)</p> <p>① 피해개요를 안전책임관에게 보고 ⇒ 장기적인 피해가 클 때에는 피해 물량만 우선 보고 ② 피해 상황 및 지원 상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지속적으로 전파 ③ 피해 심각 지역 및 피해현황 분석, 보고</p> <p>※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학교재해복구비 신청서 제출【별지12】 (전화: 02-781-0196, 팩스: 02-781-0196, 전자우편: sos5@edufa.or.kr) - 유·초·중·교육지원청 재해 : 교육지원청에서 공제회에 신청서 제출 - 고·특교·직기·도교육청 재해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 신청서 제출 - 사립 각급학교 : 학교에서 직접 공제회에 신청서 제출</p>
<p>3. 피해복구 협조</p>	<p>교육지원청</p> <p>①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복구 불가능한 사항은 도교육청에 즉시 보고 및 협조 요청(예산, 인력 및 시설지원 등) ② 피해복구 추진 상황 보고 ⇒ 도교육청 재난예방과</p> <p>도교육청</p> <p>① 교육시설 피해 상황, 재난복구 담당부서에 통지</p>
<p>4. 피해복구 지원</p>	<p>도교육청</p> <p>① 피해복구추진반 구성·운영 ② 피해현황 및 복구 소요예산 파악 ③ 피해복구비 지원대책 마련 ④ 피해복구비(예비비) 사용 협조 요청 ⇒ 예산담당부서 ⑤ 피해복구비(예비비) 집행지침 마련 ⑥ 피해복구비(예비비) 지원</p> <p>도교육청</p> <p>① 피해지역 및 위험시설 응급조치 지시·확인 ② 피해발생 교육시설·재산의 피해액·복구소요액 산출 ③ 피해발생 현장 응급 조치, 복구지원 및 점검</p> <p>도교육청</p> <p>① 피해발생 교육기관의 정상 운영대책 수립·시행(학생 수업 등) ② 각급학교 학생수업 결손에 따른 응급수업대책 마련 지시 및 확인 ③ 인명피해 발생 시 사후대책 수립·시행</p>
<p>5. 피해복구 완료</p>	<p>피해학교</p> <p>① 학교시설물 피해 복구 ② 학생수업 정상화</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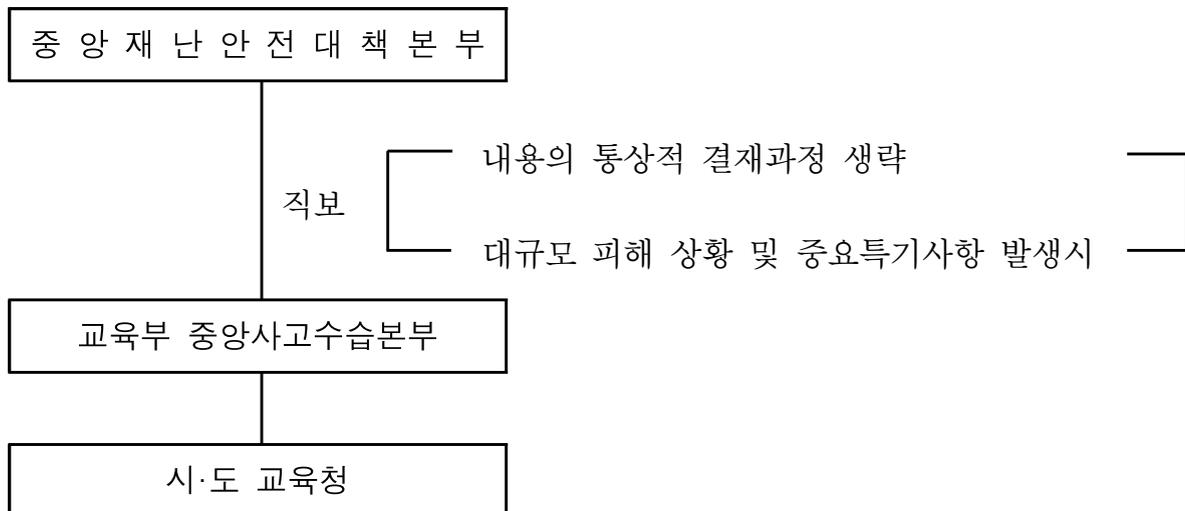
별지 1 재난보고 체계도, 네트워크 개념도

재난보고 체계도

【 통상적 보고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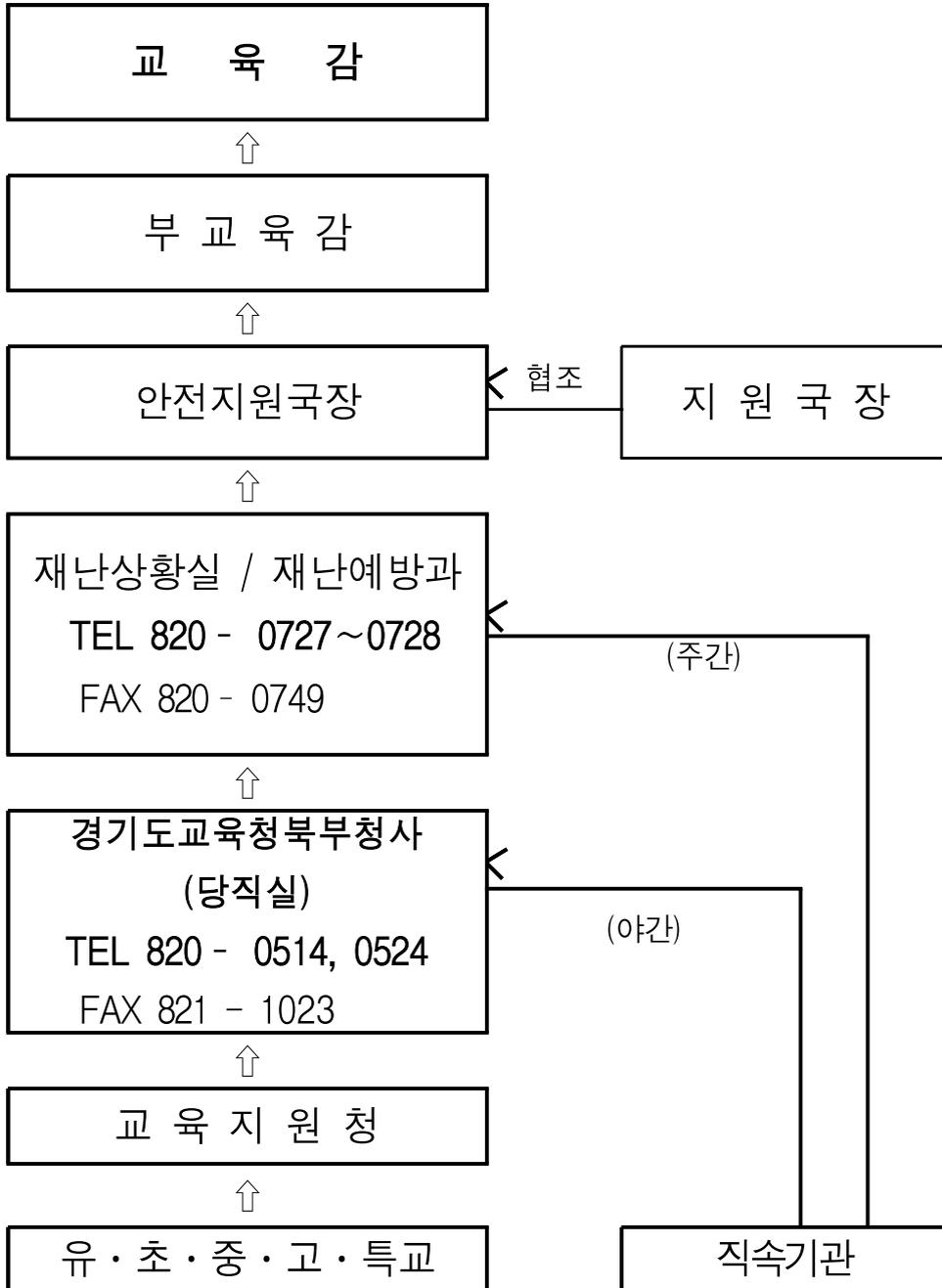


【 직보체계 】



【 자체보고체계도 】

재난유형 : 풍수해, 설해, 한파, 지진, 화재, 승강기 피해



- *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상시 게시하여 바로 연락 할 수 있도록 조치
- * 교육지원청에서는 위를 참고하여 자체 체계도 배부 요망

별지 2 자연재난대비 대책본부 운용_예시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대비 대책본부 운용(예시)

목적

-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를 편성·운영하여 관련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대처

상황관리 기간

- 여름철 대책기간 : 매년 05.15 ~ 10.15. (5개월)
- 겨울철 대책기간 : 매년 12.01 ~ 03.15. (3개월 15일)

운영방침

- 자연재난 관련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 대책본부 운용
- 대책본부내에 종합상황반을 설치하여 비상단계 시 24시간 가동체제 유지
-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 대책 본부를 편성·운영
- 상황관리 대응을 위해 도교육청은 교육부 및 경기도청 대책본부와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 대책본부 및 해당 시·군청 대책본부와 24시간 연락 체제 유지

상황근무체제

상황근무	기상상황별 단계에 맞춰 구분 운영	
운영장소	1 ~ 2 단계	방재재난담당부서
	3 ~ 4 단계	별도 상황실 구성 (비상계획 및 재난업무담당 주관)
근무인원편성	1 ~ 2 단계	관련 부서의 규정에 의거 근무
	3 ~ 4 단계	상황실 근무(09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인원구성	4개 부서 총 5명	팀장 : 사무관 또는 장학관 팀원 : 6~7급 주무관 또는 장학사
	※ 상황실 근무인원은 부서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	
근무방법	-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08:30, 17:30)에 상황실에 입실하여 전번 근무자와 합동 근무하면서 인계·인수 - 근무자는 근무 수칙을 준수하여 근무 - 근무자는 상황 근무일지를 기록·관리 - 일일상황의 보고 및 전파체계와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단체의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	
행정사항	- 비상근무시 교육지원청은 각 지역의 현황을 취합하여 도교육청 대책본부에 1일 2회 정기적으로 보고	

별지 3

자연재난 상황관리, 비상근무자의 임무 및 근무요령

비상근무자의 임무 및 근무요령

구 분	임무 및 근무요령
1·2단계 (관심·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근무 내용과 연계하여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에 기상특보 전파 ● 산하기관 상황근무 및 사전재해 예방조치 지시, 확인 및 대처 요령 전파·지시
3·4단계 (경계·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상황 파악 집계 및 보고서 작성 ● 긴급대처요령 및 응급복구 방법 지시 ● 기타 재해 상황 전반을 관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체계: 담당자 → 과장 → 국장 → 부교육감 → 교육감 ● 근무지: 1, 2단계 해당부서 사무실 / 3단계 별도 상황실 구성 ● 비상근무체제로 변경 시 전일 근무조의 다음 조부터 순차적으로 근무 ● 1, 2단계 근무 시간: 1단계(09:00~22:00), 2단계(09:00~24:00) ● 3단계 근무시간 및 교대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08:30~09:00까지는 업무 인수·인계 - 휴일: 09:00~18:00, 18:00~익일 09:00 교대 근무 ※ 08:30~09:00까지는 업무 인수·인계 및 상황파악 등을 위하여 근무자 전원 합동근무 실시 ● 근무자는 전일 근무자로부터 인수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근무 중 변화되는 상황을 즉시 파악·보고 등 신속한 대응 조치

별지 4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상황근무 보고서식(1일2회)

▷ **여름철 상황근무 보고서식**

기관명		작성자	
			전화번호:
			메일 :
			FAX :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근무 보고

피해사항	기관(학교)명	피해시간	피해내용(피해액)	연락처 (피해기관)	비고

재난(호우·태풍 등에 따른 학생수업 관련 조치 현황(등하교 시간조정, 휴업/휴교)

번호	지역	학교급별	학교명	조치사항	비고
1					
2					
3					

※ 조치사항 란은 등·하교 시간조정, 휴업, 휴교 등으로 작성(별지작성 가능)
 - 등·하교 시간조정의 경우 구체적인 시간 작성(예: 등교시간 9시→10시로 조정)

이재민 발생시 수용시설(학교 등) 지정 등 조치 현황

기타 특이사항

▷ 겨울철 상황근무 보고서식

기관명		작성자	
			전화번호:
			메일 :
			FAX :

겨울철 재난 대비 상황근무 보고

피해사항	기관(학교)명	피해시간	피해내용(피해액)	연락처 (피해기관)	비고	

재난(대설·한파 등)에 따른 학생수업 관련 조치 현황(등하교 시간조정, 휴업/휴교)

번호	지역	학교급별	학교명	조치사항	비고
1					
2					
3					

※ 조치사항 란은 등·하교 시간조정, 휴업, 휴교 등으로 작성(별지작성 가능)
 - 등·하교 시간조정의 경우 구체적인 시간 작성(예: 등교시간 9시→10시로 조정)

이재민 발생시 수용시설(학교 등) 지정 등 조치 현황

기타 특이사항

Ⅲ. 피해복구 시까지 수업대책

-

Ⅳ. 학교 임시휴업 및 휴교현황

지역별	학교명	학 교 현 황				휴업또는 휴교기간	휴업또는 휴교사유	비고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직원수			

Ⅴ. 기관(학교)별 이재민 수용상황

지역별	수용 학교	수용 일시	수용 시설		수용 사항				수용학교의 수업대책	비고
			시설명	실수	수용 예정기간	수용 세대주	수용 인원	수용 이유		

Ⅵ. 학교 주요조치사항¹⁰⁾

-

Ⅶ. 교육지원청 주요조치사항¹¹⁾

-

Ⅷ. 향후대책(복구계획)

-

※ 참고자료(학교 일반현황)

- 소재지(주소) :

설립 구분	개교 년월일	교장	행정실장 (직급,성명)	학급수 (학급)	학생수 (명)	교원수 (명)	직원수 (명)	비고

- 시설 현황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창고	화장실			비고

- 기타 현황

- 붙임 : 1. 피해현장 사진 각1부.
2. 학교 위치도 및 건물배치도¹²⁾ 1부.

10) 학교 주요조치사항에 ‘학생 및 교직원 대피’사항, 응급조치사항, 유관기관 신고사항 등 기재
11) 교육지원청 주요조치사항에 학교점검사항 및 피해복구 관련 조치사항 등 기재, 해당재난관련 언론보도여부 확인
12) 피해시설 ‘건물배치도’에 적색으로 표기

붙임1

피해현황 사진(예시)

<00초 후면 외벽 드라이비트 탈락>	
별관동 옆면 외벽 드라이비트 탈락	별관동 옆면 외벽 드라이비트 탈락

별지 6 인적재난 _화재발생 상황보고서_서식

화재발생상황보고

기관명 : ○○ 학교 (○○시) 작성자 : 소속 ☎ 학교 ○○실 최초보고사항 : 20 . . . (요일) 00:00	보고일 : 직 성명 , h·p ○직 ○○○가 교육지원청 ○부서 ○○○에게 유선보고
--	---

I. 화재발생개요

1. 발생장소 :
2. 발생일시 및 최초발견자 :
3. 소방서 신고 :
4. 화재진화
 - 소방관, 차량 출동 : 20 . . . () 00:00경 (소방차량 대)
 - 진화일시 : 20 . . . () 00:00경
5. 발생 원인 :
6. 기타 특이사항¹³⁾ :

II. 피해 상황¹⁴⁾ : 총 교(유 , 초 , 중 , 고 , 특수 , 직속기관)

1. 인명 피해 및 인적사항

구분	지역	학교명	학년반	성명	직접적 피해일시		응급조치 사 항	비고
					발생 일시	피해 원인		

2. 시설·물품 피해현황

(단위:천원)

지역별	학교명	학교급 (설립별)	피 해 내 용						직접적 피해일시		복구대책	
			피해 정도	시설명 (물품명)	구조	건축년도 (구입년도)	피해 물량	피해액	발생 일시	피해 원인	복 구 소요액	복구 계획
계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여부 :

3. 기타피해

13) 화재발생시, 언론보도 여부 필히 확인하여, 특이사항에 기재
 14) '피해상황 등'은 【별지5】 '자연재난상황보고서' 작성요령을 참조

Ⅲ. 피해복구 시까지 수업대책

-

Ⅳ. 학교 임시휴업 및 휴교현황

지역별	학교명	학 교 현 황				휴업또는 휴교기간	휴업또는 휴교사유	비고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직원수			

Ⅴ. 기관(학교)별 이재민 수용상황

지역별	수용 학교	수용 일시	수용 시설		수용 사항				수용학교의 수업대책	비고
			시설명	실수	수용 예정기간	수용 세대주	수용 인원	수용 이유		

Ⅵ. 학교 주요조치사항

-

Ⅶ. 교육지원청 주요조치사항

-

Ⅷ. 향후대책(복구계획)

※ 참고자료(학교 일반현황)

- 소재지(주소) :

설립 구분	개교 년월일	교장	행정실장 (직급,성명)	학급수 (학급)	학생수 (명)	교원수 (명)	직원수 (명)	비고

- 시설 현황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창고	화장실			비고

- 기타 현황

붙임 : 1. 피해현장 사진 각1부.

2. 학교 위치도 및 건물배치도 1부.

별지 7 인적재난 _승강기피해발생 상황보고서_서식

승강기피해발생 상황보고

기관명 : ○○ 학교 (○○시)	보고일 :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 학교 ○○실	, h·p
최초보고사항 : 20 . . (요일) 00:00	
○직 ○○○가 교육지원청 ○부서 ○○○에게 유선보고	

일반 현황	보고자	보고일
	건물명	건물용도
	대표자 성명	안전관리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
	사고 발생 장소(설치호기)	사고 발생 일시
승강기 현황	승강기 고유번호(ID)	승강기 종류 및 용도
	제조업체	유지관리업체
	설치일 또는 완성검사 합격일	최종 검사기관
	최종 검사일	최종 검사 결과
자체점검 현황	최종 점검일	점검 결과
	점검자	자격 유무
사고 내용 및 조치사항	중대사고 여부 [] 중대사고 [] 중대사고 해당안됨 [] 중대사고 여부 판단 곤란(전문조사 필요)	현장보존 조치 필요 여부 [] 현장보존 조치 필요, [] 현장보존 조치 불필요
	① 피해자 인적사항(성명, 나이, 성별, 피해정도)	
	② 사고 내용 및 응급조치	
	③ 사고원인 및 예방 대책	
향후대책		

※ 참고자료(학교 일반현황)

- 소재지(주소) :

설립 구분	개교 년월일	교장	행정실장 (직급, 성명)	학급수 (학급)	학생수 (명)	교원수 (명)	직원수 (명)	비고

- 시설 현황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창고	화장실			비고

- 기타 현황

붙임 : 1. 피해현장 사진 각1부.

2. 학교 위치도 및 승강기 배치도 1부.

별지 8 재해복구경과보고서_서식 (학교 → 교육지원청 → 본청 보고용)

재 해 복 구 경 과 보 고

15)

(기관명 : OO학교)

I. 재해개요

1. 재해원인 :
2. 재해기간(발생일시) :
3. 재해지역(장소) :
4. 강우(강설)량 또는 지진강도 :
5. 참고사항(특이사항) :

II. 피해 상황

1. 인명 피해
2. 시설·물품 피해

(단위:천원)

지역별	학교명	학교급 (설립별)	피 해 내 용						직접적 피해일시		복구대책	
			피해 정도	시설명 (물품명)	구조	건축년도 (구입년도)	피해 물량	피해액	발생 일시	피해 원인	복 구 소요액	복구 계획
계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여부 :

III. 재해복구 추진사항 (복구기간: 20 . . . ~ 20 . . . 일간)

1. 재해복구 완료된 사항

일 시	조 치 내 용	비 고
20 . . . ()	○	
20 . . . ()	○	

2. 향후 추진 계획

일 시	조 치 내 용	비 고
20 . . . ()	○	
20 . . . ()	○	

붙임 : 현장사진 1부.

15) 재해발생후 5일 이내에 피해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복구계획 수립후 「재해복구상황」 보고
 ※ 피해액, 복구소요액 정확히 산출

재 해 복 구 결 과 보 고

16)

(기관명 : OO학교)

1. OO월 OO일 OO:OO분경 OO지역에 규모 O.O의 OO 발생

으로 인한 피해 복구 완료

2. 피해상황 : 기 보고자료 참고하여 작성

3. 재해복구 내용

(단위 : 천원)

복구비 집행 내역				재원별			
사업명	물량	집행액	세부내역	재난 복구비	자체예산	교육청 지원	합계
OO공사	1식	5,000	교실바닥 교체	4,800	400	0	5,200
OO구입	5개	200					
합 계		5,200					

4. 기타 사항

- 최종보고 이후 발생한 추가사항 기재

붙임: 현장사진(전,후) 1부.

별지 10 재난상황통보서_서식 (교육지원청→ 경기도,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통보용)

재 난 상 황 통 보

수 신: 도, 시·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접수일시:
시행일시:	발 신: (인)
제 목: 인명피해, 인명구조, 교통두절, 기타()	
1. 일 시:	
2. 장 소: 도 시·군 읍·면·동 리 번지	
3. 상황개요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 사망 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기 타: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력: 명(군 경 소방 공무원 기타)	
· 장비: 대()	
6. 지원 및 협조사항	

별지 11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

□ 주요 내용

- (학생 안전 관리) 기상상황에 따라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조치
 - 학교장·교육장은 기상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결정·조치 후, 시·도 교육청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

《 등·하교 시간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 》

(경보예보 시) 도교육청 조치(4~6시간 前) → 중대본 → 언론발표(중대본)

(경보수준의 돌발상황) 중대본 → 도교육청과 협의 → 언론발표(중대본)

(기타상황)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교육장·교육감이 조치

※중대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비상연락망 유지) 교육부·중대본 ↔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각급학교(학교장-교직원-학생·학부모) 간 비상연락체제 구축
 - 비상상황 발생 시, 전화 및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등교시간 연장 및 조기 귀가 등을 학부모·학생에게 즉시 안내

□ 조치 사항

- 기상악화로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결정 시, 시·도 교육청으로 즉시 보고

별지 12 교육시설공제회 신청관련

재난공제회 가입시에는 학교건물, 100만원 이상의 물품, 도서, 건물의 부속물 대상 목록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실사를 하여야 합니다.

세부업무명	관련법규
1. 교육시설재난공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비는 교육청에서 일괄 납부 ■ 기본 부속물인 담장의 종류 (가입 및 보상범위 확대 해설.p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div style="background-color: #ADD8E6; padding: 5px; margin-top: 10px;"> 주요내용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목적 :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며, 각급학교 교육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하기 위함 ② 대상 : 학교건물, 취득단가 100만원 이상의 물품, 도서, 건물의 부속물 (급수대, 헬스, 조희대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③ 보상책임기간 : 차년도 1월1일 0시~12월31일 24시까지(1년간) ④ 공제회비 : 일반건물 120원/㎡(건물의 경과연수, 구조종별, 용도구분 없음) 폐지학교 건물 100원/㎡ ⑤ 건물가입시 자동당보되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교구 : 칠판, 게시판, 교탁, 학생용책걸상, 교사용책걸상, 실험대, 사물함, 신발장, 청소도구함, 키폰주장치(키폰포함) •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 분야(천정형냉난방기 포함) ⑥ 도서관 도서류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방식 : 물품으로 가입 • 가입방법 : 도서관리대장과 구입금액이 표기된 도서 전체를 1식으로 가입 • 추가가입 : 구매된 도서류는 100만원 이상으로 묶어서 가입 가능 • 예외 : 고서, 문화재류, 가입금액이 도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2.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 <div style="background-color: #ADD8E6; padding: 5px; margin-top: 10px;"> <이월 경우 공제회에 통보합니다>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을 재난발생 시 ■ 공제대상건물의 구조·용도 및 증·개축의 변동 발생 ■ 공제대상건축물의 타보험사 이중 계약시 ■ 연도중 폐교임대매각, 소유권 변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기가입공문접수 : 매년 11월경 ② 건물현황 실사조사 및 내·외부 시설물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경우, 정확한 실사를 통한 연면적 산출 • 물품 : 취득단가 100만원 이상 • 건물의 부속물 : 누락된 부속물(공작물) 재산대장 등재 철저 ③ 공제회 가입신청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방법 : 교육시설재난공제회(www.edufa.or.kr)에 접속하여 별지 내역 입력 • 붙임 : 공제대상 학교별 내역표, 공제대상 건물별, 물품, 건물부속물 내역표 • 제출처 : 유·초·중학교 →교육지원청, 고등학교→도교육청

세부업무명	주요내용
3. 교육시설 재난 발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보상대상으로 피해복구가 시급을 요할 경우에는 공제회와 사전협의 절차 후에 선복구 실시가 가능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청대상 : 공제회에 가입한 교육시설이 화재, 풍해, 수해, 한파 및 설해로 인한 피해 및 화재로 인한 신체손해를 입은 경우 ② 재해상황보고서 제출 : FAX 송부 ③ 재해복구비 지급 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붙임 : 재해상황조사서, 화재증명원(화재에 한함), 건축물 관리대장, 건물 평면도, 복구비 산출내역(공사원가계산서, 견적서 등), 재해사진, 통장사본, 기타 참고자료 • 신청방법 : 초·중학교 →교육장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공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감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사립학교는 공제회로 직접 신청

재난상황통보 주요내용

● 재난상황통보 주요내용

- 학교명 및 회원명
- 재난 발생일시
- 소재지
- 재난원인 및 경위
- 공제가입 현황
- 피해내역, 규모, 정도
- 피해액 및 복구소요액 등

● 해당 서식 다운로드

- 홈페이지 알림서비스 내 정보자료실 (별지 제7-1호)

재난 상황 조서

1. 재 난 학 교 명 : (전화:)

2. 소 재 지 :

3. 재 난 일 시 :

4. 재 난 종 별 : 화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붕괴, 폭발, 한파

5. 재 난 원 인 및 경 위 : (6하원칙에 의하여 기술)

5. 피 해 내 용 :

가. 인 명 피 해 : (피해자 인적사항 및 손해정도)

나. 건 물 피 해 : (단위 : m, 천원)

건물 번호	건물명	구조 종별	건축 년도	가입신청		피해상황			피해액	복구비 신청액
				실/동	가입면적	실/동	피해면적	피해내역		

다. 부속물 피해 (단위 : 천원)

용명/규격	신축일	규격 및 구조	가입금액	피해 수량	피해정도	피해액	복구비 신청액

라. 물품 피해 (단위 : 천원)

용명/규격	취득일	운영부서/실	가입금액	피해 수량	피해정도	피해액	복구비 신청액

7. 재 난 복 구 대 책 :

8. 재 난 건 물 평 면 도 :

9. 재 난 현 장 사 진 :

10. 기 타 참 고 사 항 :

공제급여 신청서류

재난복구비	신체손해 배상금	
	부상/장해	사망
1. 재난복구비 지급신청서	1. 신체손해 배상금 지급신청서	1. 신체손해 배상금 지급신청서
2. 재난상황조서	(신청공문 별도)	(신청공문 별도)
3. 가입내역(해당물건)	2. 진단서	2. 진단서 또는 사망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화재증명원(화재에 한함)	(상해·장해등급 기재)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5. 건축물 관리대장	3. 재해(직)증명서	(용도 : 보상금신청용)
(부속물과 물품은 재산대장)	4. 주민등록초(등)본	4. 재해(직)증명서
6. 건물평면도(치수기재)	5. 청구하는 금액의 산출기초	5. 주민등록초(등)본
7. 복구비 산출내역		6. 청구하는 금액의 산출기초
(공무원가계산서, 견적서 등)		7. 상속자 합의서
8. 현장사진		
9. 은행계좌번호		
10. 기타 참고자료		

별지 13 기상특보별 국민행동요령

기상 특보별 국민행동요령

1) 호우주의보: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도시 지역	농촌 지역	비고
①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②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감시 ③ 고압전선 접근금지 ④ 옥내외 전기수리금지 ⑤ 각종 공사장 안전조치 ⑥ 고속도로 이용차량 감속운행 ⑦ 뇌우시 저지대 또는 인근 가옥으로 대피 ⑧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 및 홍수 예보 청취 ⑨ 배수문 및 양수기 점검 ⑩ 하수도 및 배수로 점검·정비	① ~ ⑩ 은 도시지역과 동일 ⑪ 농작물 보호 ⑫ 용·배수로 정비 ⑬ 소하천 및 붓물, 뚝 정비 ⑭ 산간계곡의 야영객대피 조치 ⑮ 농축산 시설보호	

2) 호우경보: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도시 지역	농촌 지역	비고
①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② 노후가옥, 위험축대 접근금지 ③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④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⑤ 피해지역 응급조치 ⑥ 낙뢰나 뇌우시 작업장 안전조치 ⑦ 위험시설물 사전제거 ⑧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⑨ 홍수에 따른 저지대 주민대피 ⑩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 및 홍수 예보 청취 ⑪ 전신주, 신호등 접근금지 ⑫ 저지대지역 양수작업실시 ⑬ 하수도 맨홀 등 위험개소접근금지 ⑭ 고층건물 옥상 접근금지 ⑮ 아파트 등 지하실 접근금지 ⑯ 노약자, 어린이 외출금지 등	① ~ ⑩ 은 도시지역과 동일 ⑪ 농작물 보호 ⑫ 용·배수로 정비 ⑬ 논둑보수 및 물꼬조정 ⑭ 소규모교량은 안전 확인 후 이용 ⑮ 산사태 위험지구 경계 강화 및 접근 금지 ⑯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⑰ 농축산시설 보강 ⑱ 하천, 수로 등 접근금지 ⑲ 이웃주민과 연락방법 확인 ⑳ 저지대지역 주민 대피 ㉑ 이재민발생시 수용 조치 ㉒ 농기계 등 안전지대 이동 조치 ㉓ 가축 등 안전지대 대피조치 ㉔ 노약자, 어린이 이동금지 등	

3) 태풍주의보: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의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도 시 지 역	농 촌 지 역	비 고
①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②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감시 ③ 고압선 접근금지 ④ 각종 공사장 안전조치 ⑤ 고속도로 이용차량 감속운행 ⑥ 뇌우시 저지대 또는 인근 가옥으로 대피 ⑦ 지붕결박, 낙하위험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⑧ 송전철탑의 도괴 또는 누전, 방전 발견시 인근 기관이나 한전에 동시 연락 ⑨ 출입문, 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⑩ 노약자, 어린이 외출금지 ⑪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① ~ ⑫ 은 도시지역과 동일 ⑬ 농작물 보호 ⑭ 용·배수로 점검 ⑮ 소하천 및 간이취입보 등의 점검, 정비 ⑯ 산간계곡의 야영객 대피 ⑰ 농촌시설보호 및 보강	

4) 태풍경보: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 이상 예상될 때

도 시 지 역	농 촌 지 역	비 고
① 저지대·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② 노후가옥, 위험축대 접근금지 ③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④ 피해개소에 대한 응급복구 ⑤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⑥ 뇌우시 작업장 안전조치 ⑦ 위험시설물의 사전 제거 ⑧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⑨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 및 홍수 예경보 청취 ⑩ 아파트 등 고층건물 안전조치 (유리창 테이핑, 낙하물 고정 등 조치) ⑪ 고층건물 옥상 접근금지 ⑫ 어린이, 노약자 외출금지 ⑬ 건물 옥외간판 등 고정조치 ⑭ 신호등, 전신주 접근금지 ⑮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⑯ 아파트 등의 지하실 접근금지 ⑰ 차량 주차상태 확인 ⑱ 정전대비 비상대처 준비 ⑲ 비상시 연락방법 확인 ⑳ 교통이용수단 확인	① ~ ⑨ 은 도시지역과 동일 ⑩ 농작물 보호 ⑪ 용·배수로 보수 ⑫ 논둑보수 및 물꼬 조정 ⑬ 소규모 교량은 안전 확인 후 이용 ⑭ 산사태 위험지구 경계 강화 및 접근금지 ⑮ 산간계곡의 야영객 대피 ⑯ 소하천 및 간이취입보 등의 점검, 정비 ⑰ 산간계곡의 야영객 대피 ⑱ 농촌시설보호 및 보강 ⑲ 농림시설 결박 및 보호조치 강화 ⑳ 이웃간 연락방법 확인 ㉑ 피해발생지역 접근금지 ㉒ 가축 등 대피조치 강구 ㉓ 노약자, 어린이 이동금지 ㉔ 하천변, 수로 등 접근금지 ㉕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결박조치 ㉖ 비상시 교통이동수단 확인	

**5) 강풍주의보: 육상에서 풍속이 14m/s 이상이고 또는 순간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의 경우 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도 시 지 역	농 촌 지 역	비 고
① 지붕결박, 낙하위험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② 고압송전시설의 인접지역 접근금지 ③ 옥,내외 전기수리 금지 ④ 송전철탑주변 접근금지 및 누전, 방전사항 발견시 인접기관이나 한전에 즉시 연락 ⑤ 공사장내 가시설물 안전 조치 및 비상전원 점검 ⑥ 출입문, 창문 등을 굳게 닫고 잠글 것 ⑦ 노약자 및 어린이 외출금지 ⑧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 예보 청취	① ~ ⑧ 은 도시지역과 동일 ⑨ 농작물 보호 ⑩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보호조치	

**6) 강풍경보: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고 또는 순간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의 경우 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도 시 지 역	농 촌 지 역	비 고
① 간판 등 부착물의 고정 및 결박 ② 고가, 위험담장 접근금지 ③ 수방단 위험지구 대기 ④ 옥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⑤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 예보 청취	① ~ ⑤은 도시지역과 동일 ⑥ 특용작물 등 농작물 보호 ⑦ 비닐하우스 등의 보호조치 강화	

7) 대설주의보: 24시간 신적설 5cm 이상 예상될 때

도 시 지 역	농 촌 지 역	비 고
① 등산객, 관광객의 조속 하산 및 귀가 ② 각종 차량의 감속 운행(안전장구 부착) ③ 노후가옥 안전점검 ④ 노약자 및 어린이 외출금지 ⑤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 ⑥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 예보 청취 ⑦ 대중교통수단 이용	① ~ ⑦ 은 도시지역과 동일 ⑧ 가옥주변 적설제거 ⑨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8) 대설경보: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30cm 이상 예상될 때

도 시 지 역	농 촌 지 역	비 고
① 등산객, 관광객의 조속 하산 및 귀가 ② 외출자제 ③ 제반 차량운전자의 감속운행(안전장구 부착) ④ 피해지역 응급복구 실시 참여 ⑤ 내집 앞, 골목길 등에 염화칼슘·모래 등 살포 ⑥ 대중교통수단 이용 ⑦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 예보 청취	① ~ ⑦ 은 도시지역과 동일 ⑧ 고립지역 비상연락 조치 ⑨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시설 보호 조치	

9) 지진해일주의보: 한반도 주변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고,
 해일파고 0.5~1.0m 지진해일이 내습할 때
 지진해일경보: 해일파고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도 시 지 역	농 촌 지 역	비 고
① 테이블 등 밑으로 들어가 머리 보호 ②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하고 가스전기 차단 ③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말고, 엘리베이터 탑승 시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린 후 대피 ④ 화재를 침착하고 빠르게 소화 ⑤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져 대단히 위험하므로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됨 ⑥ 피해지역 응급복구 실시 참여 ⑦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 예보 청취	① ~ ⑦ 은 도시지역과 동일 ⑧ 고립지역 비상연락 조치	



재해예방은
 학교사랑의 실천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II. 교육시설 방재관리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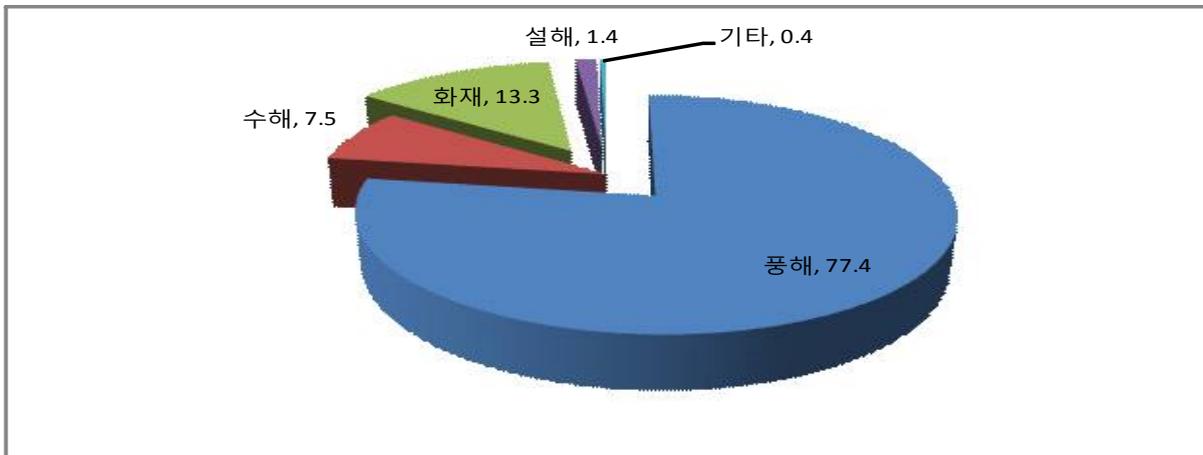


풍수해(태풍·호우)

I 개요

1 재난 유형별 발생현황

- 최근 3년간(2011~2013) 교육시설의 각종 재난발생비율



2 태풍·호우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현황

	단설유	초	중	고	특교	직속기관
2011	0	14	12	8	1	1
2012	1	118	50	58	1	6
2013	0	18	9	8	0	2
2014	0	8	2	3	0	0

- 태풍·호우 피해 건수 : 320건 ⇒ 2013년 37건, 전년대비 197건 감소(84.2% ↓)
- 태풍·호우 피해 발생 다발순 : 초 > 고 > 중 > 직속기관 > 특교 > 단설유

3 태풍·집중호우 특보 발표기준

구분	내용
태풍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17m이상의 폭우를 동반하는 것을 말함.
경보	태풍주의보 : 태풍으로 인한 강풍, 풍랑, 호우가 예상될 때
	태풍경보 : 태풍으로 인한 강풍, 풍랑, 호우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될 때 (풍속이 17m/s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이상 예상될 때)
집중호우	짧은 시간 동안 특정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국지성)

II 주요 내용

1 예방·대비 대책 및 점검사항

1. 예방 대책

-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정비

《 자연재해 시설물 》

- 학교 인근의 소하천, 토사유출, 낙석방지시설, 옹벽 및 축대 등
- 상·하수도 시설, 배수로, 배수구, 건물옥상 바닥, 건물 외벽 드라이버트, 건물 외부 수배전반 등
- 자체점검 시기
 - * 5월 ~ 10월 : 수시점검
 - * 11월 ~ 4월 : 월 1회 이상 점검
- 점검결과조치
 - * 위험요소 시설물은 시설관리기관의 예산으로 정비
 - * 긴급정비시설물을 상급기관 예산활용 보강
 - * 우기 전 정비가 어려운 시설물은 학생대피계획수립 등 재해응급대책 강구 후 특별관리

《 학교 등 건설공사장 》

-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책임자 지정
 - * 관리카드 작성 : 공사장시설현황, 관리책임자 연락처, 재해발생시 조치사항, 점검일지 기록 등
 - * 관리책임자 : 공무원, 시공회사, 감리원 등 지정
- 점검방법
 - * 수시점검 : 시공회사, 현장감리원이 합동으로 수시점검 후 관리책임 공무원에게 통보
 - * 정기점검 : 관리책임 공무원이 월 1회 점검, 5월중에 행정기관, 사업시행자, 시공사 감리원이 종합점검 후 미비사항 보완 조치

태풍·호우 대비 점검사항

☂ 미리미리 대비해야 해요 !

- 태풍이 내습하거나 장마가 오는 7월 전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교내 비상연락망과 관계기관과의 연락망 점검·확인
- 기상방송을 통하여 태풍 및 호우발생 현황을 청취
- 태풍·호우로 인한 침수 등에 대비한 대피계획을 수립
- 지역 내 저지대(지하로) 및 상습침수구역의 위치 파악
- 태풍·집중호우 대비 학생 행동요령을 숙지
- 학교 내 붕괴, 산사태, 침수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피해가 발생하면 어찌죠 ?

-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교육청 및 유관기관에 보고
- 필요 시 등·하교 시간조정, 휴업 등의 학사행정 조치를 결정하고 전파
- 학생들의 교외 학습활동(현장학습, 체험활동 등)을 검토·조정
- 토석류 붕괴, 산사태 등 학교 내 위험지역 접근 차단
- 등·하교 시 위험상황(침수, 통학로 소실 등)을 확인하여 알리고 대응 조치를 실시

※ 참고. 풍수해 행동요령【별지 1】

☂ 점검해야 할 시설은 무엇일까요 ?

- 침수·단전 등에 대비한 준비사항 점검
- 유리창에 금이 가거나 깨진 것은 교체
- 퇴실시에는 교실 및 복도 창문의 잠금상태를 확인
- 천장마감재의 접합부 들뜬 부분을 보수
- 단전 및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조명기구를 구비
- 낙뢰발생시 형광등이나 전기기구로부터 1m이상 이격
- 교사동 지붕 흡통 및 옥상 배수구의 낙엽 등 이물질을 제거
- 천막, 비닐, 로프, 모래주머니 등 방재용품을 점검하여 구매
- 태풍에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물품)은 정리
- 교내 하수도 및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정비하고, 낙엽 등 이물질을 제거
- 교내 수목 중 가지가 많은 것은 가지치기를 하고, 지주목을 정비
- 산사태에 대비하여 옹벽의 균열과 배수구를 정비
- 노후되거나 기울어진 담장, 축대 등은 보수·보강

2. 대비 대책

① 태풍, 호우 발생상황 파악

- 기상청 등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를 통해 상황 파악
- 위성영상, 각종 수치자료 등을 바탕으로 태풍 진로 및 호우 진행 상황 주시

② 상황 판단 회의

- 기상청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난정보를 분석하고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및 재해대책본부 운영 여부 판단

③ 위기경보 발령 접수 및 전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소방방재청)의 위기경보 발령 접수
- 태풍, 호우 관련 위기경보를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소속기관에 신속히 통보
- 전자결재 공문, 문자서비스, 유·무선 및 FAX 등으로 상황 전파
- 위기경보 발령 수준에 따른 적절한 재난대비 조치 요청

④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체제 구축

-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재난발생시 소관 분야별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긴급지원 계획 수립
- 하천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붕괴위험 시설 등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 민·관·군 공동대응체제 구축으로 재난발생시 신속한 지원 및 현장 대응능력 제고
 - 경보발령,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 진화, 수방, 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 피해시설 응급 복구 및 방역과 방법, 질서유지
 - 긴급수송, 구조, 긴급급수, 구호품확보 지원
 - 이재민 수용시설 지원(학교시설)

⑤ 긴급대피체제 구축

- 태풍, 집중호우 등에 의한 침수, 붕괴 등 재난발생 예상시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 최소화
- 상습취약지역 학교파악 관리
 - 산사태위험지역, 상습침수지역, 붕괴위험지역, 해일위험지역 등
 - 학생 전화번호(집, 휴대폰, 부모직장)등 비상연락체제 유지, 신속전파
- 주민 및 학생 안전의식 고취 등 홍보 강화
 -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의 지속적인 홍보로 경각심 고취
 - 위험지역 출입금지 등 홍보

② 대응·복구 대책 및 점검사항

1. 대응 대책

① 단계별 비상근무체제 확립

《 1단계: 준비단계(주의보 발령시) 》

- 상시대비 단계 :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사전대비단계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또는 인적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단계
- 주요 조치 사항
 - * 호우, 태풍 등 재해 경보 파악 및 전파
 - * 태풍 발생 시 태풍의 진행 방향, 호우 발생 시 호우 상황 파악
 - * 비상연락망 점검 등 재난대책 근무태세 유지
 - * 인터넷 통신, 전화 및 팩스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 재해대비완료가 어려운 지역은 가배수로, 안전표지판 등 설치
 - * 수방자재 확보 관리
 - * 주요시설물 순찰, 점검 활동 강화

《 2단계: 비상단계(경보 발령시) 》

- 풍수, 태풍 영향권내 해안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의 학생긴급대피 및 수용 조치
- 시·군청,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
- 수방자재, 구호물자 현지 반출 등 지원 및 구호
-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조치

② 위험지역 주민, 학생 대피 체제 확립

- 재난 예·경보 신속 전파 : 기상특보, 재난 예·경보 등 신속 보도
-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소속 기관 비상근무 강화지시 및 대처상황 확인
- 방재 관련 유관기관과 홍보 협조 강화
- 주민·학생의 신속한 대피
 - 저지대 침수, 고립 예상지역, 산사태 예상지역, 붕괴위험 등 재난위험 지역 주민 및 학생 대피조치 및 안전대책 강구
 - 학교수업(등교시간 조정, 조기 귀가, 휴업 등)실시 여부 검토 등 학생 보호대책 강구
-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
 - 유관기관 조직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관할경찰서, 군부대, 보건소, 소방서
 - 피해상황 파악 : 사망, 부상, 실종 등 인명피해 및 학교시설피해
 - 구조·구급 활동, 응급조치 활동
 - 의료, 통신, 교통 두절시 소통 대책
 - 이재민 대피, 수용 및 구호 대책
 - 비상급수 및 생필품 공급 대책
 - 쓰레기 처리 및 방역 대책

③ 피해조사보고(학교 및 교육지원청)

- 피해조사
 - * 피해발생시 응급조치 후 시설직공무원 협조로 피해개요 및 피해액 및 복구액 산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여부, 구분하여 전체적으로 파악)
- 피해액 등을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보고

2. 복구 대책

-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대책 판단 : 응급복구, 기능복구, 개선복구
- 피해조사
 - * 조사내용 : 피해원인 조사, 피해수량 및 복구계획, 재해대장 및 복구조서 작성
 - *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재해대장, 복구조서 검토
- 복구비용 지원 및 지원요청

태풍 · 호우가 지나간 후 점검사항

☂ 비가 그치고 태풍이 지나가면 뭘 해야 하지 ?

-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태풍의 영향권 및 호우특보가 해제되었는지 확인
- 태풍 및 호우가 지나가고 나면 학교 관리자는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 상황을 교육청 및 관계기관에 보고
- 피해 확산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실시
- 전기와 가스시설이 훼손되었으면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하여 복구
- 피해부분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
- 복구 작업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2인 이상 함께
- 지붕이 파손 되었을 때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응급 복구
- 파손된 조립식 건물은 추가 붕괴 위험이 있으니 출입 삼가
- 기둥, 보 등이 훼손되었을 경우 전문가의 안전점검 필수
- 침수에 따른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물이 빠진 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교내 건물에 대한 소독을 실시

설해(대설)

I 개요

① 대설의 특징

- 대설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시간당 1 ~ 3cm 이상 또는 24시간 이내 5 ~ 20cm 이상의 눈이 내리는 현상
-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집중성이 강하며, 30분 ~ 2시간 주기로 강약의 변동을 보이나 일반적으로 70% 이상이 그 지속시간으로 12시간을 넘지 않음
- 10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내리며, 대부분 11월과 3월 사이에 내림

② 대설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현황

	단설유	초	중	고	특교	직속기관
2011	0	0	0	1	0	0
2012	0	1	0	0	0	0
2013	0	12	1	3	0	0
2014	0	0	0	0	0	0

- 설해(대설) 피해 건수 : 18건 ⇒ 2013년 16건, 전년대비 15건 증가 (93.8% ↑)
- 설해(대설) 피해 발생 다발순 : 초 > 고 > 중 > 단설유·특교·직속기관

③ 대설 특보 발표기준

구분	내용	비고
대설 주의보	24시간 새로 쌓인 눈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눈을 밟으면 신발이 묻히는 상황
대설 경보	24시간 새로 쌓인 눈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산지는 30cm 이상)	눈을 밟으면 신발이 완전히 빠지는 상황

II 주요 내용

1 예방·대비 대책 및 점검사항

1. 예방 대책

- ① 시설도구 확보 및 사전점검·정비
 - 삽, 너가래, 빗자루 등 확보
 -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 등 적정량 확보
- ② 시설 취약구간에 대한 시설 관리대책 추진
 - 학교 등 진입로, 상습 결빙구간
 - 급커브 및 급경사 구간
- ③ 학교 및 교사, 학생 홍보 강화
 - 설해 발생 및 한파 시 학교 및 교사 조치사항, 학생 행동요령
 - 적설량, 기온 등 기상상황 신속 전파
 - 교통 통제 등 교통 정보사항
 - 내 집, 내 학교 앞 눈은 내가 치우기
 - 스마트폰 앱 및 문자서비스 등을 활용 홍보

2. 대비 대책

- 풍수해 대책에 준하여 업무처리



대설 대비 점검사항

☞ 미리미리 대비해야 해요 !

- 임의로 증축한 건물은 전문가의 안전점검 필요
- 적설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조립식 건물의 신·증축을 지양
- 불가피하게 경량철골조 건물을 건축시에는 적설하중을 충분히 고려
- 과거 폭설 피해가 있었던 학교는 유사건물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
- 체육관, 경량철골조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눈이 흘러내릴 수 있게 충분한 지붕 경사도를 확보
- 재난방송을 통하여 대설 예보·경보를 청취
-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망[교내 및 관계기관(주민자치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을 점검·확인
- 학교 관리자는 폭설 대비 안전대책을 수립
- 대설 대비 학생 행동요령을 교육
- 학교 내 취약요인 점검을 위한 안전점검반을 편성·운영
- 학교 내 위험지역(붕괴, 눈사태 등)을 지정하고 표시
- 학교입구, 출입구, 계단 등에 제설작업(염화칼슘, 모래 등 살포) 실시
- 등·하교 시 위험상황(통학로 소실, 교통 두절 등)을 확인하고 대응조치(교육, 학부모 연락, 이동 안전 조치)

☞ 피해가 발생하면 어찌죠 ?

- 피해상황을 파악한 후 교육청 및 유관기관에 보고
- 필요 시 등·하교 시간조정, 휴업 등의 학사행정 조치를 결정하고 전파
- 학생들의 교외 학습활동(현장학습, 체험활동 등)을 검토·조정
- 등·하교 시 위험상황을 확인하여 알리고 대응 조치를 실시

※ 참고. 설해(대설) 행동요령 【별지 2】

☞ 점검해야할 시설은 무엇일까요?

- 처마홍통은 규격에 맞게 설계하고 긴결철물(간격이 넓은 철골 구조물 및 철판덮개) 간격을 적합하게 시공
- 제설장비·인력·자재(염화칼슘, 모래, 소금)를 점검
- 연동형 온실은 폭설시 눈이 지붕골에 쌓여 피해가 가중되므로 쌓인 눈을 신속히 제거하고, 지지대를 설치
- 지지대로 사용할 버팀목, 널가래 등 방재용품을 구비
- 조립식, 경량철골조, 체육관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
- 지붕 면적이 넓은 조립식패널 건물에는 중앙에 기둥을 설치

대설이 지나간 후 점검사항

❗ 대설이 그치면 뭘 해야 하지 ?

- 학교 관리자는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기상특보가 해제되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 학교 관리자는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 상황을 교육청 및 관계기관에 보고해야 해요.
- 경량철골조 건물은 눈이 녹은 후에도 피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해요.
- 안전을 위하여 복구공사는 2인 1조로 진행해야 해요.
- 교사동 옥상의 쌓인 눈은 얼기 전에 치워야 해요.
- 조립식 건물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울 때는 그늘진 곳부터 신속하게 치워야 해요.
- 붕괴된 건물은 학생들의 접근을 금지해야 해요.
- 조립식 건물과 체육관 지붕이 붕괴되면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해요.
- 복구공사는 눈을 제거한 후 실시 하여야 해요.
- 구조적으로 파손된 곳은 교육청에 의뢰하여 점검해야 해요.



한파

I 개요

① 한파의 특징

- 한파는 저온의 한랭기단이 위도가 낮은 지방으로 몰아 닥쳐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는 현상
- 한파가 발생하면 동상 등 인체피해와 수도관 및 계량기 동파,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함

② 한파의 발생 통계

- 최근 3년간(2011~2013) 한파특보 발표현황

	전국	서울, 경기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평균건수	99	24	27	33	18	9
2011	86	17	18	23	16	12
2012	111	30	35	22	19	5

● 한파특보 발표 평균건수 : 충청도 > 강원도 > 경상도 > 서울, 경기 > 전라도

③ 한파 특보 발표기준

구분	발령 기준
한파 주의보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 값 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한파 경보	10월~4월 사이의 기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고 평년 값 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II 주요 내용

1 예방·대비 대책 및 점검사항

1. 예방 대책

- ① 한파방지도구 확보 및 사전점검·정비
- ② 학교 및 교사, 학생 홍보 강화
 - 한파 시 학교 및 교사 조치사항, 학생 행동요령
 - 기상상황 신속 전파
 - 교통 통제 등 교통 정보사항
 - 스마트폰 앱 및 문자서비스 등을 활용 홍보

2. 대비 대책

- 풍수해 대책에 준하여 업무처리
- 기상청의 동상가능지수 에 따른 주의사항

단계	기상조건	설명 및 주의사항
높음	-5℃ 미만	피부가 2~3시간동안 기상조건에 직접 노출되면 염증으로 인한 수포가 생성됨. 장시간 노출시에는 구조조직 괴사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함
보통	-5~1.5℃ 미만	피부가 2~3시간동안 기상조건에 직접 노출되면 혈관확장 및 염증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함
낮음	-1.5℃ 이상	손 발 귀 등의 국소조직을 적절히 보온하면 동상위험이 보통

- 기상청의 동파가능지수 에 따른 주의사항

단계	기상조건	설명 및 주의사항
매우높음	-10℃ 이하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수도관에 물이 흐르도록 해야함
높음	-10℃ ~ -5℃ 이하이고 전일최저기온이 -5℃ 미만	수도꼭지 및 계량기 보온에 주의
보통	-10℃ ~ -5℃ 이하이고 전일최저기온이 -5℃ 이상	수도꼭지 및 계량기 주의 필요
낮음	-15℃ 초과	동파 가능성 낮음

※ 참고. 한파 행동요령 【별지 3】

한파가 지나간 후 점검사항

- ☛ 한파가 지나가면 뭘 해야 하지 ?
 - 학교 관리자는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기상특보가 해제되었는지 확인
 - 학교 관리자는 피해 상황을 교육청 및 관계기관에 보고
 - 안전을 위하여 복구공사는 2인1조로 진행
 - 구조적으로 파손된 곳은 교육청에 의뢰하여 점검

지진(지진해일)

I 개요

① 지진(지진해일)의 특징

- 지진은 지구 안의 땅덩어리가 커다란 힘을 받아 모양이 변하거나 끊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며, 지진해일(쓰나미)은 지진에 의해서 생기는 파도로서 바닷속에서 큰 화산이 분출할 때 발생
-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은 비록 그 규모는 작지만 약 1,900여회나 되며, 최근에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

② 지진의 발생 통계



○ 지진의 발생 평균건수 :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③ 지진 특보 발표기준

구분	내용
지진 주의보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0.5~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때 - 진도기준(지진 4~5):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수준.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며, 약간의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짐
지진 경보	한반도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해일파고 1.0 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때 - 진도기준(지진 5~6): 잘 설계된 구조물은 기울어지고 실제 구조물에는 큰 피해가 발생되며 부분적으로 붕괴됨.

④ 지진의 재난 형태

구 분	직접 피해	연계 피해
지반 파괴	지반변형/붕괴/액상화	건물 등 시설물의 2차 붕괴
	산사태, 매몰	교통두절, 인명피해
구조물 붕괴	건물 전도/붕괴	인명피해, 이재민의 발생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도로, 철도 구조물 파괴	교통두절, 긴급 수송 불가 고속철도, 지하철 대형사고
	항만시설 파괴	항만물류 수송 불가
	전기, 가스, 수도 등 라이프라인시설 파괴 공동구 파괴	전기전력, 가스, 수도 등 단절 정보통신, 금융전산시스템 마비 식용수 공급중단
	위험물 시설 파괴	위험물 중독·오염,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댐 등 주요 시설물의 파괴(댐붕괴)	댐 하류부 침수
	원자력 발전소 등의 파괴	방사능 누출피폭, 오염 및 전기 공급 중단
	가스관, 유류탱크, 전기설비 파손 등	시설물 화재피해 및 사상자 발생
해일 범람	침수, 붕괴, 범람 해안시설물 파괴	인명피해, 이재민의 발생 어항 및 항구시설 마비

II 주요 내용

① 예방·대비 대책 및 점검사항

1. 행정실 및 교무실에서

- ① 학교 관리자는 지진에 대비한 사전 대비훈련을 실시
- ② 학교 관리자는 비상연락망 및 비상근무체계를 수시로 점검
- ③ 전기·가스·수도의 차단장치 위치와 조작방법을 숙지
- ④ 교실별 피난로를 지정하고, 대피장소를 정하여 안내문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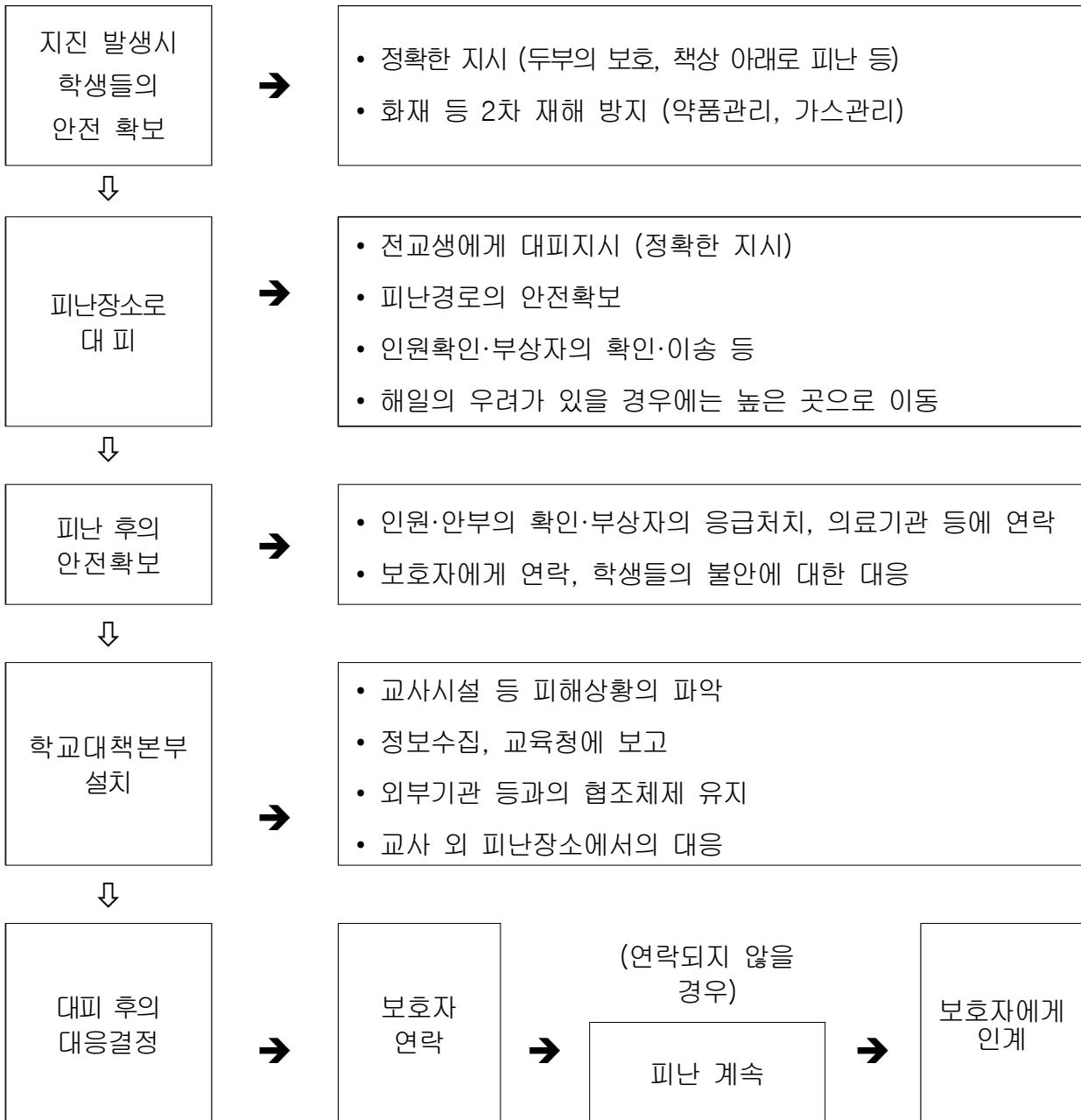
2. 실내에서

- ① 각 교실 내에서 위험한 위치(유리창 주변, 책장이나 넘어지기 쉬운 캐비닛 주변)를 확인해두고 지진 발생시 위험한 위치에서 멀리 떨어짐
- ② 실내의 단단한 책상 아래, 내력벽 사이 작은 공간 등 안전한 위치를 파악
- ③ 전열기, 가스기구를 단단히 고정하고 전기·가스·수도를 차단
- ④ 교실별 피난로를 지정하고, 대피장소를 정하여 안내문을 설치

3. 실외에서

- ① 교사동의 균열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동이 심하면 관계기관에 점검을 요청
- ② 건물의 기초와 건물주변의 지반 상태를 점검
- ③ 옹벽, 담장의 균열이 있는지 점검
- ④ 기와지붕 등의 파손 여부를 점검

② 지진(지진해일) 발생시 대응체계



※ 참고. 지진(지진해일) 행동요령 【별지 4】

지진(지진해일)이 지나간 후 점검사항

⚡ 지진이 지나가고 뭘 해야 하지 ?

- 학교 관리자는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지진 특보가 해제되었는지 확인
- 산중턱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산사태, 낙석에 주의
- 교내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가스누출을 확인
- 상·하수도와 전기 안전을 확인한 후 관계기관에 연락
- 부상자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한 후 119에 연락
- 추가 발생하는 여진에 대비
- 대피장소까지는 도보로 움직이며, 여러명이 모여서 대피장소로 이동

화재(폭발)

I 개요

① 학교시설 화재발행 현황

- 최근 3년간(2011~2013) 교육시설의 화재 발생 현황

	단설유	초	중	고	특교	복구액(천원)
2011	0	2	2	2	0	88,099
2012	0	2	2	3	0	315,698
2013	0	5	2	2	0	777,565

- 화재건수 : 22건 ⇒ 2013년 9건, 전년대비 2건 증가(28% ↑)
- 피해복구비 : 1,181,362천원 : 2013년 777,565천원, 전년대비 461,867천원 증가(146% ↑)
- 화재발생 다발순 : 초 > 고 > 중 > 특교

II 주요 내용

① 화재예방 추진방안

1. 초등학교

- ① 교실 내 노후 전기시설 교체 및 전기용품 점검 정비 철저
 - 퇴청 시 전기 콘센트, 멀티탭, 선풍기, TV등 안전점검 철저
 - 야간에 전원차단 등 안전관리 철저
- ② 학교 경비원 등 관리자에 대한 화재예방활동 강화
 - 콘테이너 창고 등 가건물 배전반 관리 철저
 - 쓰레기 등 가연물 제거 및 화재예방 교육 강화

2. 중학교

- ① 교실 내 노후 전기제품교체 및 전기시설 관리 철저
 - 중학교화재는 대부분 교실의 전기제품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노후배선과 멀티탭 등 교체 요망
- ② 학교시설책임자에 대한 소방안전의식 강화
 - 학교 내 흡연행위 절대금지로 담뱃불에 의한 화재발생 방지
 - 쓰레기통 및 소각로 관리 철저
- ③ 주방 및 급식실, 식당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강화

3.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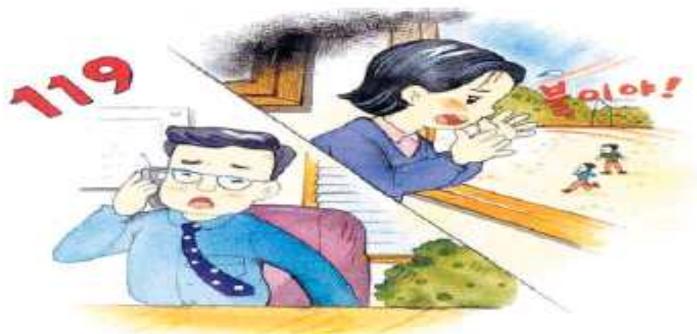
- ① 학생들에 의한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강화
 - 옥상, 휴게실 등에 담뱃불에 의한 부주의 화재 예방 홍보
- ② 방화관리자 화재예방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
 - 전기실과 보일러실의 화재는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방화관리자의 안전의식이 부족
- ③ 학교책임자에 대한 소방안전의식 강화

② 전교생 대피훈련 실시

전교생 대피훈련은 화재 또는 지진발생시 다수의 학생들이 질서있고 신속한 행동으로 대피 할 수 있도록 습관화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훈련임. 특히 기숙사를 갖춘 학교는 정기적인 대피훈련이 요구됨

- ① 실시횟수 : 연 4회 이상
 - 학년 초(3월)에 연속 2회 실시가 권장되며 이중 1회는 소방서로 요청하여 소방관 입회하에 실시
 - ※ 미국 학교는 연 8회 이상 실시함(LNTB Curriculum)
- ② 훈련주관 : 학교장(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안전지도교사)
- ③ 훈련대상 : 전교생 + 전체 교직원
- ④ 훈련내용 : 화재 및 지진대피훈련
 - 화재전파, 운동장대피, 초기소화, 119신고, 화재진압 등
 - 소방시설사용법 숙지(자탐, 비상방송, 소화기, 옥내소화전, 방화문 등)

※ 참고. 화재대피훈련운영 매뉴얼 : 서울특별시 제작. 2009년 【 별지 6 】



화재 · 폭발 대비 점검사항

☞* 행정실, 교무실에서

- 학교 관리자는 화재 대비 소방훈련계획, 방재계획을 수립
- 소방점검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은 즉시 보수 및 시정
- 불필요한 가연성 물질(폐지, 폐박스 등) 정리
- 교사동 각 층 소화전에 피난유도 계획서 작성하여 부착
- 각 실별로 화재예방 점검표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 교무실, 행정실, 교실에서 사무기기의 문어발식 사용을 금지
- 최종 퇴실자는 전기제품의 전원을 끄고 전원 코드를 뽑기
- 개인 전열기구 사용 금지
- 소화기 충압 상태 매월 확인
- 취사기구의 사용을 금지

☞* 교실 · 실습실에서

- 전기코드가 부분적으로 끊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진 곳이 있는지 확인
- 소화기를 주출입구 옆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
- 실험 전 기구 사용법 및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
- 폭발 및 화재 위험이 있는 약품들은 출입구에서 먼 위치에 보관
- 일반 소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화학실에는 모래함을 준비

☞* 화장실에서

- 점검구 덮개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열지 못하도록 관리
- 화장실 환풍기가 고장, 노후화된 것은 교체

☞* 복도에서

- 옥내소화전의 램프가 켜져 있는지 확인
- 옥내소화전의 호수 비치 상태 및 부식 여부 확인
- 복도 방화문 작동 여부 점검

☞* 급식실에서

- 조리원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
- 급식실의 자동확산 소화기는 화기가 있는 조리기 상부마다 설치
- 조리기구는 2인 1조로 사용하고 사용 중에는 자리 비우지 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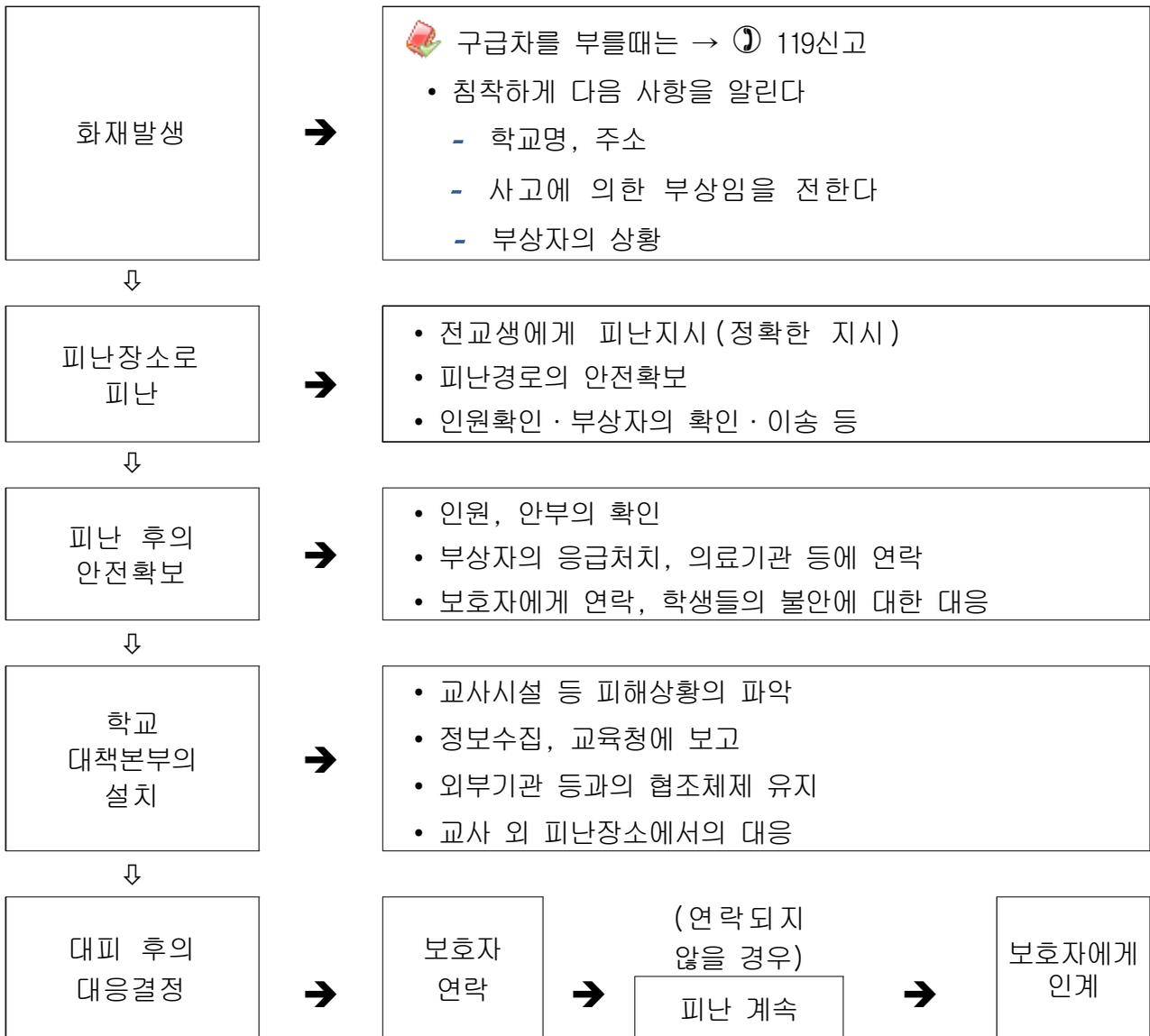
☞* 합숙소에서

- 별도로 건축된 합숙소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
- 화재 피난로를 2곳 이상 확보
- 숙소 내 휴대용 취사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조리실 출입을 통제
- 소화기 배치, 작동상태를 매월 확인하고 소화기 사용방법을 숙지시킴

☞* 창고에서

- 창고 등 부속건물의 노후화된 전기시설은 교체
- 쓰리게 분리 보관소에 담뱃불 등을 버리지 않도록 조치

③ 화재 발생시 대응체계



※ 참고. 화재(폭발) 행동요령 【 별지 5 】

④ 화재 · 폭발 후 조치사항

- ① 학교관리자는 화재 발생에 대하여 즉시 상부기관과 공제회에 보고한다.
- ② 화재가 발생한 곳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 ③ 학교 관리자는 피해 정도를 판단하여 수업대책을 수립한다.
- ④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부기관과 함께 사고대책반을 설치한다.
- ⑤ 건물에 구조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다.
- ⑥ 화재 발생 직후부터 피해부분에 대하여 상세하게 사진을 촬영한다.
- ⑦ 행정실에서는 소방훈련, 소방점검, 전기안전점검 등의 서류를 준비한다.
- ⑧ 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복구공사를 진행한다.

승강기 사고

I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① 관련법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조 및 같은 법 제2조

②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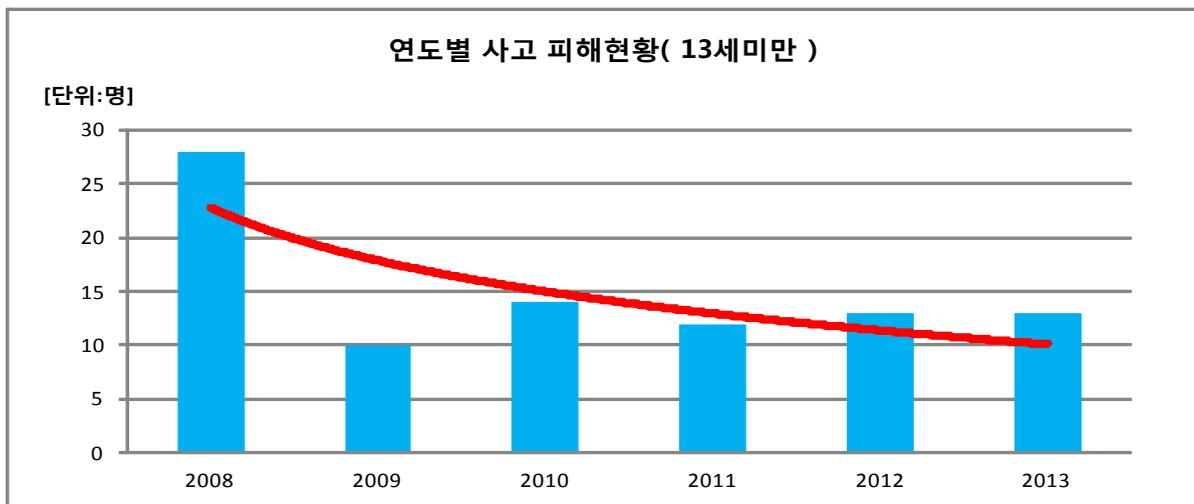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철저로 승강기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시 긴급복구체계 확립 구축
- 승강기시설의 중대한 사고나 고장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 적용

③ 승강기 안전사고 피해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국승강기 사고 건수(1만대당)	154 (4.03)	115 (2.85)	129 (3.04)	97 (2.17)	133 (2.82)	88 (1.77)
이용자 과실	112 (72.7%)	80 (69.6%)	107 (82.9%)	84 (86.6%)	113 (84.9%)	65 (73.9%)

● 승강기 안전사고율('2004년~2008년 → 2009년~2013년' 사고율 추이)

- 13세미만 17.7%→8.5%, 13세~65세 55.9%→54.8%, 65세이상 25.4%→35.7%



Ⅱ 대책 수립

① 예방 대책

1. 재난대비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① 「찾아가는 승강기 안전체험 교실」 서비스 신청

* 연락처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교육연수실

(전화 : 02-3497-7428, fax : 02-3463-8597)

② 승강기 관리주체자 또는 책임을 위임받은 자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③ 승강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홍보매체(인터넷, 모바일, 방송, 신문, 잡지 등)를 이용한 홍보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2.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강화

① 안전관리자('구 운행관리자)의 선임·변경 통보 의무 철저

② 승강기 시설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 관리 강화/ 시설 관리자의 점검/ 관리 지도

③ 승강기 시설 관리자 미선임 승강기관리주체 행정조치(시·군 담당부서)
: 과태료 부과

④ 노후 승강기(15년 경과) 정밀안전진단실시(승강기안전관리원, 기술원)

⑤ 승강기 이용자 안전이용 교육·홍보실시(안전스티커 부착)

3.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관리

① 관련법에서 정한 등록기준 유지 및 보수관리상대 점검

- 사무실, 보수설비, 기술인력, 자본금, 보험가입 등 확인
- 보수계약 및 보수범위의 적정여부
- 월 1 회 이상 자체검사 및 검사기록 작성여부

② 대비 대책

1.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한 대비대책 구축

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승강기 검사, 교육사업, 종합정보망 운영 기관 간 정보 공유)

②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승강기 검사 및 감리, 컨설팅)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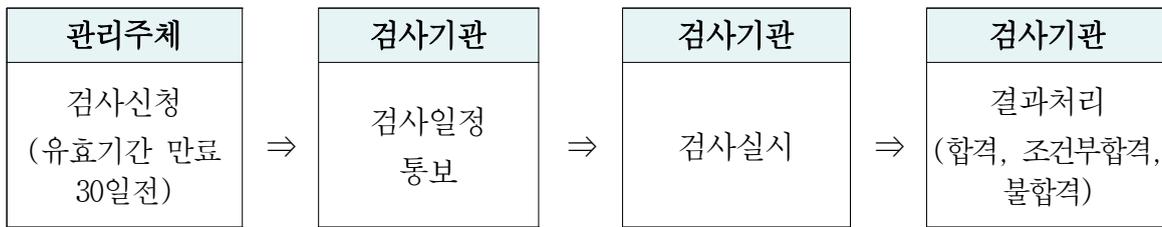
2. 승강기 유지관리 방법

- ① 승강기 관리주체(승강기 운행관리자 선임)
 - 운행관리자 자격조건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운행관리자 교육수료자
- ② 승강기 보수업체 선정(유지관리 등록업체)
- ③ 자체점검자 선임(승강기 운행관리자 교육이수자)
- ④ 승강기 보수업자(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계약 체결 시)
 - 정기점검 실시 및 예방점검(월1회이상 자체점검 포함)
 - 승강기 고장발생 시 응급조치(유지관리 보수업체)

3. 정기검사를 통한 승강기시설 안전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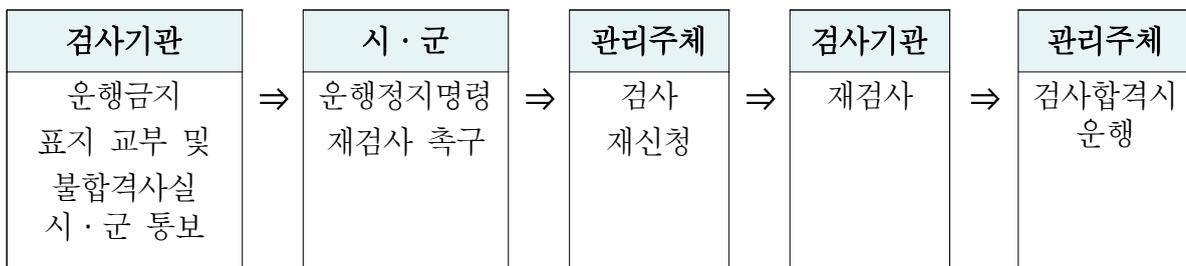
- ① 승강기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 종료 후 주기적실시(매 1년)
- ② 승강기검사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4. 승강기 정기검사 흐름도



5. 정기검사 불합격시

- ① 미수검 승강기 및 불합격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도록 재검사 이행 및 운행 정지명령 (시·군 담당부서)



※ 참고. 승강기 내 갇힘 발생시 행동요령 [별지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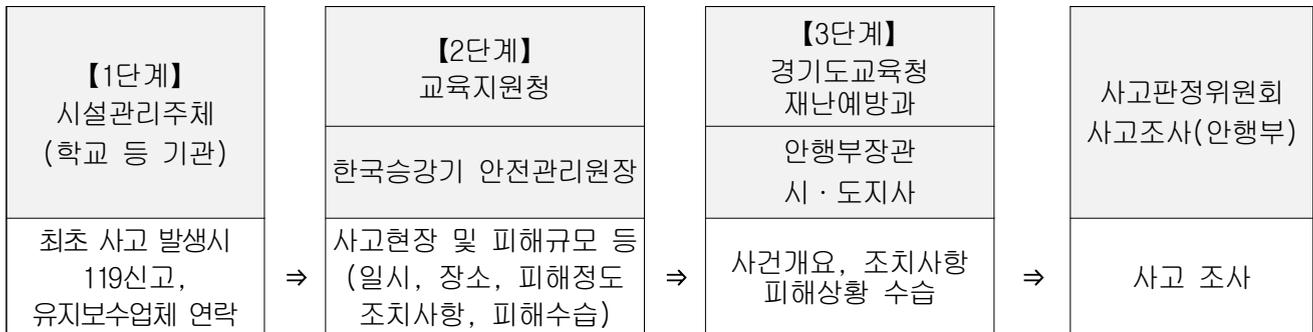
③ 대응 대책

1. 보고 대상

상황근무자가 전화접수, 인터넷 검색, 뉴스시청으로 승강기 중대사고나 중대고장 (정전으로 인한 승강기 갇힘 사고를 포함) 사망, 5인 이상 부상 및 언론보도 등 중대 사안에 관련된 내용 확인 시 상황 파악 후 무조건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신고접수 및 보고체계

《 단계별 보고체계(법 제16조의4제1항)》



3. 비상소집 및 상황전개



4. 승강기 종류별 분류

- 승강기(인승용,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

5. 건물 용도별 분류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에 따름

6. 사고 원인별 분류기준

- 직접적인 원인만 사고원인으로 분류(이용자의 과실, 유지관리 부실 등)

7. 피해 정도별 분류기준

구 분	분 류 기 준
경 상	3주(21일) 미만
중 상	전치 3주(21일) 이상
사 망	-

8. 피해자 신분별 분류기준

구 분	분 류 기 준
일반이용자	- 일반이용자, 건물의 승강기 비관련 직원
건물관리직원	-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운전자, 건물소속의 보수점검자 또는 자체검사자, 관리소장, 승강기업무와 관련된 건물직원 또는 경비원 등
승강기업체직원	- 승강기 제조 및 보수업체의 기술직 직원

별지 1 풍수해 행동요령

구분	행동 요령
교무실 · 행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매체(TV, 라디오, 인터넷)에서 기상 상황을 확인 · 등교 전 등·하교 시간조정 및 임시휴업 등에 대한 연락을 확인 · 우산, 우비, 장화 등 우천 대비 용품 사전준비 · 침수 등으로 인하여 등교가 어려울 경우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통보
실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풍에 대비하여 유리창, 출입문 잠금장치 확인 · 물이 새는 곳이나 파손된 곳을 발견하면 선생님이나 행정실에 알림 · 집중호우로 침수되거나 고립 시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구조를 요청
실외 등하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은 우회하여 등교 · 공사장, 하천, 배수로 주위는 위험하므로 접근 금지(익사위험) ·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고압전선 근처는 접근 금지(감전위험) · 강풍에 날리는 간판 등 물건들을 조심

별지 2 설해(대설) 행동요령

구분	행동 요령
교무실 · 행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매체(TV, 라디오, 인터넷)에서 예상 적설량을 확인 ·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 · 버팀대, 낙가래 등의 제설장비 및 용품을 사전 점검 · 적설량이 50cm 이상일 경우, 체육관·경량철골조 건물은 붕괴 위험있으니 출입 금지 조치
실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면적이 넓은 조립식 건물 내부에는 지붕 구조체인 트러스에 버팀대를 설치 · 건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즉시 건물 밖으로 대피 · 페널지붕, 창고 등은 난방장치를 작동시켜 지붕의 눈을 녹여줌
실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진입로 및 통학로를 지속적으로 제설작업 실시 · 처마, 흙통 등에 눈은 동결되면 제거가 어렵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므로 신속하게 제설 · 건물 처마 주위에는 고드름, 결빙된 눈의 낙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접근 금지 · 대설주의보 발령 시 경량철골조 차고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

별지 3 한파 행동요령

구분	행동 요령
교무실 · 행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매체(TV, 라디오, 인터넷)에서 기상상황을 확인 • 등·하교 시간조정과 임시휴업 등에 대한 연락을 확인 • 체온유지 용품(옷, 모자, 장갑, 신발 등)을 준비 •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시 심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보건실이나 바로 병원에 방문 •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부위의 보온에 유의하고, 특히 머리부분의 보온에 신경 •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세척 후 따뜻하게 유지한 채 병원 방문
실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보온 • 보일러 밑의 노출된 배관은 헌 옷 등으로 감싸서 보온 • 수도관이나 관이 얼었을 때는 헤어드라이어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여줘야 함
실외 등·하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계획을 미리 알려둠 • 만약 자동차에서 고립될 때는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서 구조연락을 취하고,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구조요원이나 항공기의 식별이 쉽도록 색깔 있는 옷 착용



별지 4 지진(지진해일) 행동요령

구분	행동 요령
교무실 · 행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관리자는 기상방송을 청취하여 지진(지진해일)의 진행사항을 파악 • 비상 방송을 통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의 동요를 방지 • 지진 발생시 밖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학생 및 교직원에게 무작적 교사동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자제
실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내부에서 책상 밑으로 대피하고 머리를 수건 등으로 감싸 보호함 • 화재 발생시 침착하고 빠르게 소화해야 함 • 진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교사동 외로 나가지 말고 질서를 유지한 채 대기 • 교사의 지시와 교내 비상방송을 듣고 행동 • 해안가 근처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진동으로 인한 큰 흔들림을 느끼면 곧바로 곳으로 피난
실외 등·하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층 건물 주위를 지나갈 때에는 낙하물로부터 책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 • 운동장에 있을 때에는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넓은 장소 가운데로 대피 • 지하도에 있을 경우 비상방송 및 직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 • 담장 옆을 지날 때에는 담장이 전도될 위험이 있으니 멀리 떨어짐

1. 집 안에 있을 경우



테이블 밑으로 몸을 보호 !



사용 중인 불을 끄자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 !

2. 집 밖에 있을 경우 3. 상가에 있을 경우 4.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



낙하물 주의 !



침착하게 행동



가장 가까운 층에서 내려 대피 !

5. 전철을 타고 있는 경우 6. 운전 중 하고 있을 경우 7. 산이나 바다에 있을 경우



고정물을 꼭 잡자



도로 우측에 정차



산사태 등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대피!

8. 부상자가 있는 경우 9. 피난은 마지막 수단 10.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



서로 협력해서 응급 구호를 !



대피는 도보로 짐은 최소로 !



유언비어를 믿지 말자

별지 5 화재(폭발) 행동요령

1. 화재신고요령

연기나 불꽃을 발견하면 우선 “불이야!” 하고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한다.

-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알린다.
- 침착하게 전화 119번을 누른다.
- 불이 난 것을 말한다.
- 화재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한다.
 - ☞ 우리학교에 불이 났습니다. 건물4층입니다
- 주소를 알려준다.
 - ☞ OO구 OO동 000번지예요. / OO학교입니다.

2. 소화기 사용요령

① 교실이나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 진화한다.

② 소화기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 후 손잡이 부분의 봉인 줄을 제거하고 안전핀을 뽑는다.
- 바람을 등지고 서서 노즐을 빼서 잡고 불쪽으로 향하게 한다.
- 가까이 접근하여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는다.
- 빗자루를 쓸 듯이 분말(소화약제)를 골고루 쏜다.

			
안전핀을 뽑는다.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한다	손잡이를 움켜쥐는다	분말을 골고루 쏜다

③ 투척용 소화기 사용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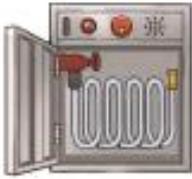


④ 소화기 설치·취급 및 사용법

- 소화기는 보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
-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하여 비치
-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지하층, 창문이 없는 곳에서는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옥내 소화전 사용요령

- ① 먼저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 ② 노즐(물을 뿌리는 부분)과 호스를 꺼낸 후 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길게 펴주고 불이 난 곳으로 다간다.
- ③ 개폐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도록 한다.
- ④ 호스에 물이 차서 나오는 것이 확인되면 노즐의 끝부분을 돌려서 분무(안개) 또는 직선으로 물을 향해 쏜다.
- ⑤ 화재진압이 끝나면 개폐밸브를 잠근다.
- ⑥ 호스를 빼서 잘 세척하고 물을 뺀 후 서늘한 곳에 말린다.
- ⑦ 소화전함에 원래대로 잘 말아서 정돈한다.

			
문을 연다	호스를 빼고 노즐을 잡는다	밸브를 돌린다	불을 향해 쏜다

4. 화재대피 요령

- ① 교사 및 학교 관리자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한다.
- ② 질서정연하게 교실에서 가까운 계단을 통해 운동장으로 대피한다.
- ③ 무섭다고 교탁이나 책상 밑으로 숨지 말아야 한다.
- ④ 무조건 창밖으로 뛰어내리지 말아야 한다.
- ⑤ 불이 난 교실의 출입문을 함부로 열지 말아야 한다.
- ⑥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처치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 ⑦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손수건 등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
- ⑧ 연기가 차고 있을 때는 낮은 자세로 상체를 숙여 대피한다.

※ 참고. 화재대피훈련 운영매뉴얼 【별지 6】

화재대피훈련 운영매뉴얼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내 피난시설의 사용 및 대피절차 훈련을 통한 습관화로 화재 등 재난상황시 안전하고 질서있게 행동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

I. 훈련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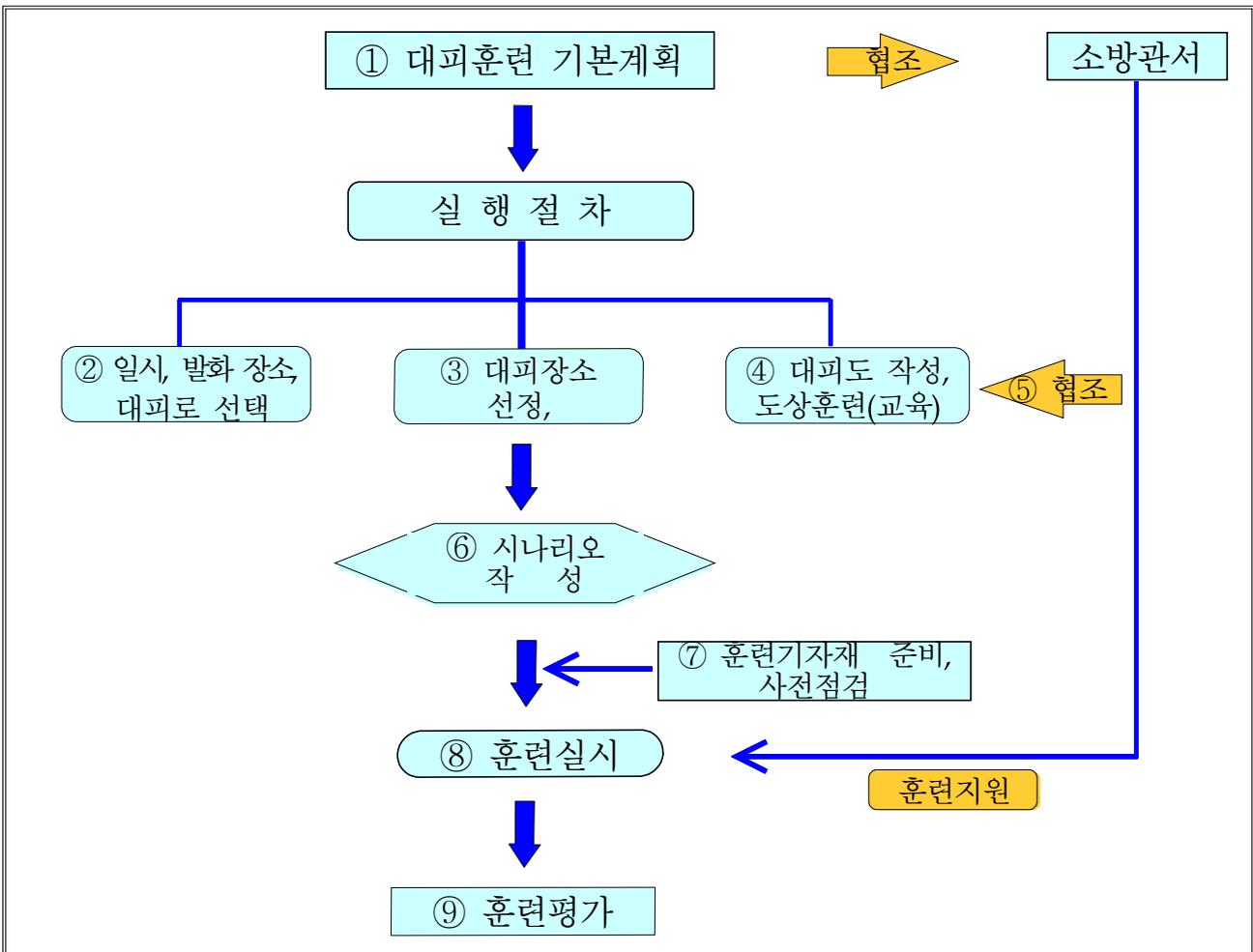
- 소중한 생명보호 Tip인 화재대피의 습관화
- 소방시설의 기능 및 사용요령 습득
- 대피훈련 평가로 다양한 자연재난 및 비상상황 적응력 향상

II. 적용범위

- 본 매뉴얼은 학교건물에 적용되며, 학교별 건물구조 및 시설 등 자체 조건을 반영한 대피계획 수립을 지원함
- 본 매뉴얼은 유치원 등 일반건물에도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

III. 운영절차 및 방법

대피훈련 운영절차 모형도



1



■ 대피훈련 기본계획 수립

- ⇒ 대피훈련은 학기중 연 4회 이상 실시한다.
- ⇒ 대피훈련의 모든절차는 교장과 교사들의 감독하에 실시한다.
- ⇒ 건물내 모든 거주자(교직원 및 학생)가 참가한다.
- ⇒ 학교의 화재대피훈련은 소화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 학기초 학생들이 화재대피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1회는 학년,학급배정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 감독의 주목적은 대피훈련의 목적달성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학생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소화활동은 대피훈련 종료 후 별도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2



■ 대피훈련 일시 및 발화장소 선정

- ⇒ 대피훈련은 정규시간 및 불시에 실시한다.
- ⇒ 발화위치는 급식실, 교무실, 과학실 등 학교내에서 화기취급을 하는 장소를 선정한다.

- 화재시 예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비해 휴식시간, 자율학습, 체육시간 등 훈련 조건을 다양하게 가정하여 실시한다.
- 발화위치에 따라 각 교실의 대피동선을 선정하고, 담당하는 반이 없는 교사도 화재시에 수업하고 있는 반의 대피로를 항상 숙지한다.
- 교실동수가 2개 이상일 경우 동별로 발화지점을 구분 선정할 수 있다.

3



■ 대피장소 선정 및 관계자 임무부여 <붙임 1, 관계자 업무분장>

- ⇒ 대피장소는 건물내의 화재로 인한 위험, 소화활동의 방해를 피하기 위한 적정장소를 미리 지정한다.
- ⇒ 안전사고 방지와 행동의 혼선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자에게 임무를 부여한다.

- 각 학급은 건물외부의 지정장소로 대피하여야 하고, 모든 학생의 수를 파악하는 동안 지정장소에 있어야 하며, 해제 및 해산신호를 받았을 때에만 지정장소를 떠날 수 있다. (사전에 각 학급별 대피장소가 미리 지정되어 있어야 함)
- 학교 전면 운동장에 모이는 것도 피해야 할 요소중 하나이다. 이것은 화재시 소방차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지정장소는 건물내의 모든 화재로 인한 위험, 소화활동의 방해, 서로 다른 학급이 몰려있을 경우 혼란 등으로 인원과악에 차질이 있으므로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것을 권장한다.
- 소방안전관리자는 학교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작동임무를 부여한다.
- 대피훈련시 중요한 요소중 하나는 피난후 인원의 파악이다. 각 반의 담당교사는 미리 학생들에게 대피후 모이는 곳(야외)을 지정하여 숙지하게 하여야 한다.

4



■ 대피도 작성 및 도상훈련 (사전교육) <붙임 2 대피도 예시“안”>

- ⇒ 대피도를 작성하여 교사간 또는 학생들과 함께 도면에 의한 토론학습을 실시한다.
- ⇒ 피난로는 2개 이상 확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 대피순서는 발화층 및 직상층부터 우선 대피하도록 한다.

- 대피경로는 항상 fool-proof¹⁷⁾와 fail-safe¹⁸⁾ 2가지 방안이 계획되어야 한다.
- 피난로 구성에 있어서 발화층을 방송하여 발화층 및 직상층부터 대피를 지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 화재시 연기의 유동상태에 따라 발화층 아래로 대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옥상으로 긴급 대피하는 것도 고려된다.
- 도상훈련시 학교 평면도를 보며 책임자(교장 또는 소방관)가 화재발생장소를 지정 하면 교사(학생)들이 대피경로를 생각하여 발표한다.
- 학생들이 학급 및 가정에서의 대피도를 직접 그려보는 교육이 권장된다.
- 학생들에게 화재시 행동요령 등 사전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시 소방관서에서 발간한 교범 및 동영상 등을 활용한다.
- 도상훈련은 학교 관계자 회의 뿐만 아니라 학급회의에도 활용이 가능하며, 위기 상황시에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미지 트레이닝(Image training)이라 할 수 있다.

5



■ 소방관서 협조 요청

- ⇒ 대피훈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훈련시 소방서의 협조를 구한다.

- 대피훈련에 대한 성과를 학교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방관서의 협조를 구한다.
- 처음 계획하는 훈련시에는 적절한 계획수립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소방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적정인력 동원을 요청한다.

17) fool-proof : 긴급대피시 혼란없이 쉽게 피난 할 수 있는 단순한 피난로 구성

18) fail-safe : 긴급 대피시 한 개의 대피로가 막히거나 위험에 노출되어도 다른 대피로 구성

- 가능한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대피훈련 실시를 권장한다.
-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훈련하는 것은 119신고시부터 소방차량 도착까지의 시간 확인 및 소방관이 학교내 최상층 중앙부까지 진입하는 것으로 훈련상황이 종료된다.

6

■ 훈련 시나리오 작성 <붙임 3, 시나리오 작성"안">

⇒ 위의 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훈련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 시나리오는 대피훈련의 운영절차 및 임무 등 세부적인 행동 등을 연속적으로 자세히 작성한다.
- 학교 대피훈련은 속도 보다는 질서있는 대응이 필수적이므로 시나리오 작성의 포인트라 할 수 있다.
- 대피훈련의 모든 정보는 화재경보설비를 작동하여 운용한다.

7

■ 훈련 기자재 준비 및 사전점검

⇒ 연기발생기 등 훈련기자재를 준비하여 실제상황을 연출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 방화셔틀 등의 대피훈련과 관계있는 소방시설의 작동여부를 사전점검 한다.
- 대피에 장애 및 안전사고가 될만한 화분 및 물품등은 사전에 제거한다.
- 계단, 비상문 및 기타 피난통로에 장애물은 없는지 적정여부를 점검한다.
-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비상문은 절대로 열어 고정시켜 두어서는 안되고 옥외 계단과 피난계단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 발화장소에는 실제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연기발생기를 준비한다.(연막탄은 안됨)
- 화재 및 훈련상황에 필요한 표지판 등을 제작 활용한다.

준비물품		
연번	물품(시설)명	내 용
1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벨, 방화셔틀, 유도등	각 학교마다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운용방법 숙지
2	연기발생기 또는 표지판	연기발생기 또는 『연기』 라고 쓰여진 표지판
3	표지판 또는 바리케이트	『비상구 폐쇄』, 『이 비상구는 화재로 인하여 막힘』 『화재장소』
4	라바쿤, 경광봉 또는 멈춤 깃발, 안전조끼	운동장이 없는 학교

8



■ 훈련실시

- ⇒ 학교 대피훈련은 질서있는 대응이 필수적이다.
- ⇒ 안전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 모든 훈련은 실제상황을 대비하는 것으로 질서를 방해하는 혼란 및 신발을 찾아 착용하는 행동, 교실에 있는 자기 옷을 입는 것을 일체 금한다.
- 대피시 교사는 신속하고, 조용하게 행렬을 맞추고 정지, 방향전환, 전진 할 수 있도록 학급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뛰는 것을 금지하여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학생은 대열에서 떨어져서 이동하지 않도록 건강한 학생을 지정하여 피난할 수 있도록 한다.
- 대피와 동시에 화장실 또는 다른 거실에서 잔류자를 찾는 것은 교사의 임무이다.
(1차 수색)
- 각 학급의 반장은 대열이 통과하는 동안 문(방화문, 교실문)을 열었을 시에는, 화재 또는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을 닫아야 한다.
- 훈련 해제를 신호가 있기까지 지정장소에서 이탈을 금한다.
- 운동장이 없는 학교 등 여건상 학교 밖으로 나가 도로를 점유시에는 경찰의 협조를 얻고, 도로 앞뒤로 안내요원을 두어야 한다.

9



■ 훈련평가 <붙임 4, 훈련 평가표>

- ⇒ 대피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모든 상황을 재평가 한다.
- ⇒ 평가결과는 대피훈련계획에 반영하여 수정·보완한다.

- 평가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항으로 체크리스트를 미리 작성하여 활용한다.
- 평가시 소방관의 전문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대피훈련계획을 수정·보완 Up-grade 한다.

< 참고자료 >

1. 서울중앙소방서 박정경, 「각종 학교재난 관련 사례 및 예방·복구」, 2014.
2. NFPA 101 인명안전코드 11-7, 「교육용도의 훈련」, 1997.
3. NFPA의 소방교육 프로그램 「LNTB(Learn Not To Burn) Preschool Program」
4. 캐로라이나 주 Charlotte-Mecklenburg Schools의 「School Fire Evacuation Plan」
(<http://pages.cms.k12.nc.us/gems/safety/FireEvacuationPlan.doc>)
5. 서울광진소방서, 「전교생 대상 대피훈련 S.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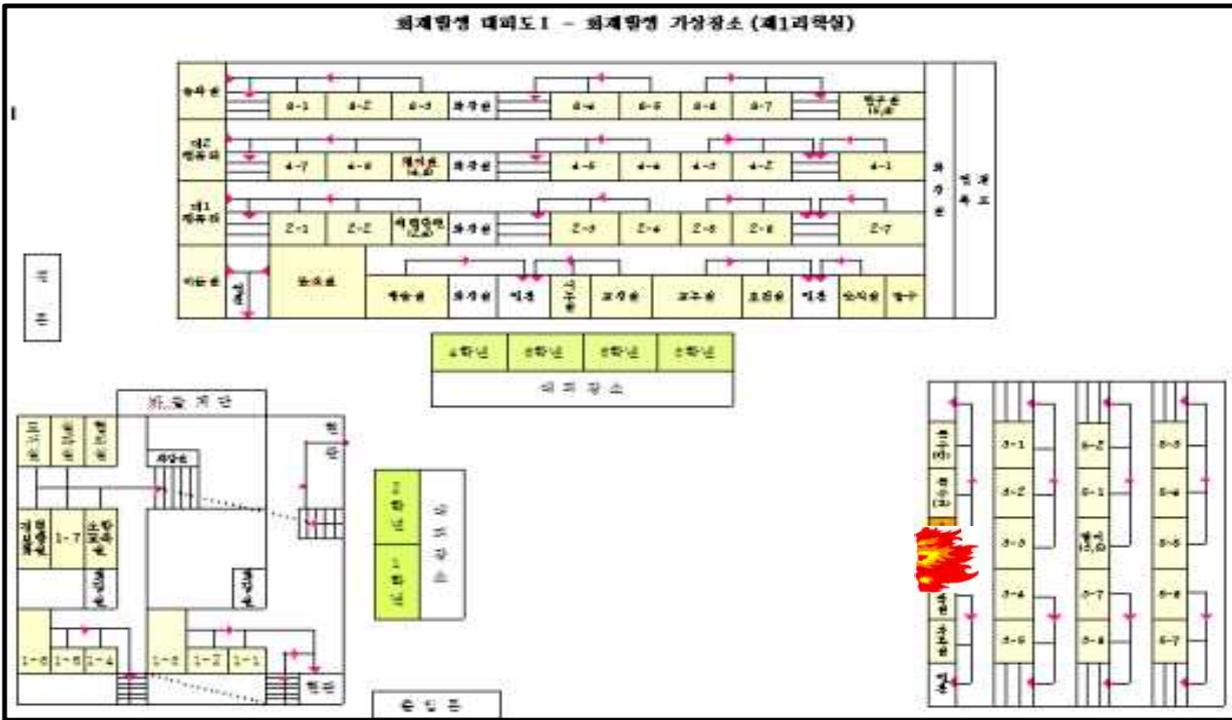
붙임1 | **훈련 관계자 업무분장(예시)**

※ 화재시와 훈련시로 나누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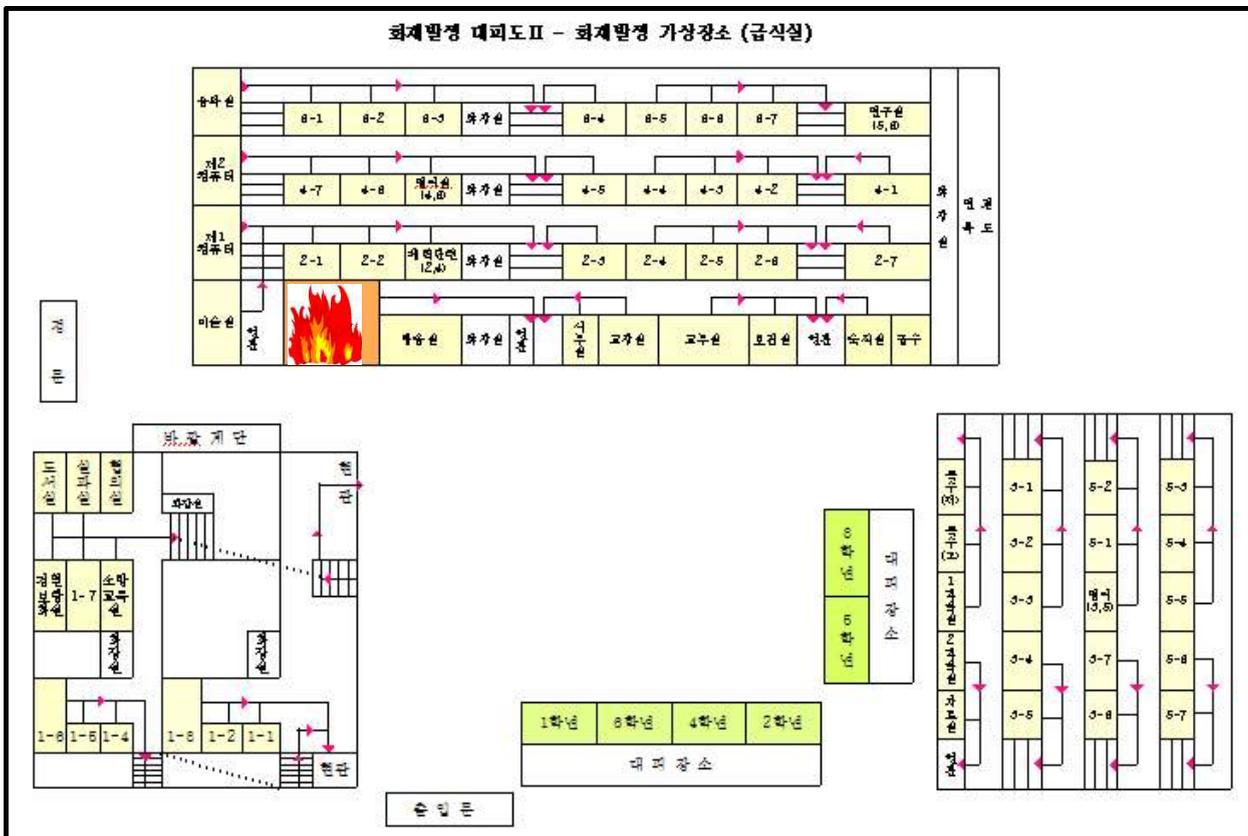
연번	직책	인원	임무	비고
1	교장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시 총괄 지휘자 ▷ 훈련 총괄 책임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 - 훈련 메시지 전달 	화재훈련
2	교감1	1	▷ 119 화재신고 및 위치 파악(영구임무)	화재시
			▷ 훈련전 관계자에게 화재에 대한 표지판 설치위치등 지시	훈련시
3	교감2	1	▷ 대피장소 인원파악 총괄 및 대피 미실시자에 대한 학년, 반 파악후 소방관참관 또는 출동 소방관에게 전달	화재훈련
4	학과교사	학급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중단 ▷ 화재 및 훈련시 지도반 학생 인솔 ▷ 일반 학급내 장애아동 도우미 학생에게 대피도움 임무부여 ▷ 반장 또는 부반장에게 학급 탈출시 출입문 폐쇄 임무부여 ▷ 학생명부 지참후 복도로 2열 종대로 피난지시(뛰지 않도록 지도)후 연기 상태에 따라 행동지시 ▷ 집결장소에서 0열 종대로 모인후 인원 파악후 교감2에게 미 대피자에 대한 정보전달 	화재훈련
5	잔여교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실로 이동하여 화재대피 방송실시 『현재 0층 00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 침착하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복 3회 - 	화재훈련
6	잔여교사	3	▷ 특수학급 대피 도우미	화재훈련
7	행정실장 행정실1	2	▷ 관계 필수 서류 반출	화재시
			▷ 화재 수신기 장소에서 경보발령 및 대피유도 1층	훈련시
8	행정실1	1	▷ 전원 차단 및 2층 대피유도	화재시
			▷ 2층 대피유도	훈련시
9	행정실2	1	▷ 교문개방(소방차량 통행 유도)	화재훈련
10	행정실	2	▷ 화재 · 훈련시 3층, 4층 대피유도	화재훈련
11	보건교사 영양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소 설치 및 진행 ▷ 영양사 : 가스 차단후, 응급의료소 진행보조 	화재훈련
12	행정실 (5) 학생봉사 (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표지 1명 ▷ 비상구 폐쇄 표지판 2명 ▷ 화재발생장소 표지판 1명 ▷ 도로점유 표지판 3명(앞뒤 등, 운동장 없는 학교) 	훈련시

붙임2 화재대피도 예시“안”

화재대피도(제1과학실)



화재대피도(급식실)



붙임3 | 시나리오 작성 “안”

교육,훈련단계	시간	훈련 내용
훈련준비	H-40	○ 대피동선 파악 - 각 담임교사와 안전교육 지도교사는 대피동선을 사전파악 및 대피시 장애가 될 요인등을 제거한다(화분등)
	H-30	○ 훈련준비 - 각 층별 유도요원 훈련시작 10분전 각층대기(인원체크) - 장비 준비 및 배치실시 - 외곽 방송장비 점검 및 준비 ○ 훈련전 대피방법 교육(10~30분) - 대피방법 설명 및 주위점, 안전사고 예방법 (안전교육 소방관은 동영상 등으로 대피교육 실시)
	H-2	○ 연기발생기 등 점화 (연기로 인한 시야장애로 안전사고 우려시 점화하지 않는다)
훈련시작	H-0	○ 가상화재 메시지 전달 - 교감선생님이 전달 (화재발견자) - 주위에 “불이야 ”하고 3회 큰소리로 외친다 00에(불이난 장소) 불이났어요 - 화재 발신기 누른다
훈련방송	H+1	○ 화재방송 실시 “훈련! 현재 ○층 ○○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도아래 안전하게 건물 외부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복 3회 =
대피실시	H+2	○ 각반 담임선생님은 모든 수업을 중단하고, 피난후 집결장소를 말한후, 출석부를 지참한 후 학생들을 복도 옆 창가로 2~4줄로 세운후 낮은 자세로 침착하게 대피를 실시하며, 화장실등 훈련에 빠진 학생들을 1차 수색한다. (절대 뛰지 않는다 - 주의사항) ○ 학생들이 우왕좌왕 하여 패닉상태로 되지않도록 않도록 강하게 대피를 지시한다.
피난완료	H+6 ~ H+12	○ 담임선생님과 대피 학생들은 각반 집결장소로 모인후, 대피인원 파악한후, 교감선생님에게 대피인원을 보고하고, 교감선생님은 출동소방관에게 대피인원, 대피하지 못한 인원(위치) 등을 통보한다
집 결	H+15	○ 각반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강당등(전교생이 모일수 있는장소)에 집결한다
강 평	H+20	○ 교육담당소방관이 각 학생들의 피난행동시 문제점, 대피시간초과, 대피동선등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다

붙임4 | **훈련 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산출방법	평가점수			비 고
			계	점수	감점	
총 점	100	총 계		100		
<input type="checkbox"/> 훈련준비사항	10	소 계		10		
○ 대피시 장애요인 및 소화시설등	5	○ 대피장애물 1개 마다 감점 1점		5		
	5	○ 복도 및 통로상 소화기 미비치 및 소방시설 불량시 감점 2점		5		
<input type="checkbox"/> 대피실시중 사항	50	소 계		50		
○ 대피시 행동	10	○ 대피시 질서유지 - 질서 없이 대피하는 1개반 마다 감점 1점		10		
	10	○ 대피방법 미숙지 1개반마다 감점 1점		10		
	10	○ 기타 행동 (대피시 주의사항에 대한 행동시)		10		
○ 대피동선 및 유도	10	○ 선생님의 대피유도방법 잘못등 1건당 감점 1점		10		
	10	○ 대피동선 잘못 지정시 1개 반마다 감점 1점		10		
<input type="checkbox"/> 대피후 사항	40	소 계		40		
○ 대피후 인원과약 및 안전사고 발생등	15	○ 대피후 인원과약시 결원 1명마다 감점 2점		20		
	10	○ 대피시 안전사고 발생 사고자 1명마다 감점 2점		10		
	10	○ 대피완료시간인 12분이후 부터 2분당 2점 감점 (인원과약까지 시간)		10		
<input type="checkbox"/> 가점사항		○ 대피시 학생들의 훈련의식 선생님들의 참여도 및 의욕에 따라 교육참관 평가관의 재량에 따라 가점부여		20점 이내		

붙임5 | **각 학교 자체훈련 계획 (안)**

■ 전교생 대상 화재대피훈련 계획

화재 대피 훈련 교육 계획

I. 목적

학교 및 주변 시설에서의 화재발생시 대피 훈련경험을 축적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한다.

II. 목표

- 1.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
- 2. 질서있는 대피
- 3. 안전문화정착 및 어린이 안전의식 제고

III. 운영방침

- 1. 전교생이 연 회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한다.
- 2.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 3. 대피훈련을 토의하여 각종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을 내면화한다.
- 4. ○○학교 “화재대피도”를 익혀 대피방법과 대피장소를 확인한다.
- 5. 훈련 상황을 비디오로 촬영한 후 평가자료로 활용한다.

IV. 실시대상

전교생 및 교직원

V. 세부훈련계획

- 1. 내용 : 화재대피훈련
 - ※ 화재대피훈련은 지진대피훈련에도 적용됨(대피전 책상 밑에서 30초~1분간 숨는것만 다름)
- 2. 훈련방법
 - 1) 훈련실시전 준비 - 학급
 - ① 대피의 필요성과 대피할 때 주의점을 확인한다.
 - ② 각 학급에서 화재대피도를 확인한다.
 - ③ 우리반이 이동할 복도와 계단, 대피장소를 확인한다
 - ④ 화재 발생시 창문과 문을 열수 있도록 담당자를 선정한다.

2) 훈련실시 전 준비 - 교사

- ① 담당 계원은 업무를 총괄하여 안전하게 훈련을 마칠수 있도록 준비한다.
- ② 학급 담임교사는 어린이 대피 훈련시 이용될 지정된 동선 및 집결장소를 파악한 후 학생들을 인솔 지도한다.(1층 → 4층 → 3층 → 2층)
- ③ 학급담임 교사는 대피훈련시 학생들의 인원파악을 위하여 학생출석기록부등을 지참한다.
- ④ 소방교육 담당교사는 각 학생들의 대피 동선안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곳을 사전에 파악하여 요인을 제거하거나 사전에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한다.

3. 훈련진행순서

- 1) 학교 방송실을 통하여 각급학생 소방안전교육 및 대피교육 실시
 - 대피시 주의점, 안전사고 예방법
- 2) 발화장소에 연기발생기 점화3) 자동화재탐지설비 벨 작동
 - 훈련방송 : “ 훈련상황입니다. 현재 ○○○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도아래 안전하게 건물외부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반복3회)
- 4) 각 학급 선생님의 지도로 복도에서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 실시
- 5) 소방교육 담당 선생님은 교육소방관에게 현재 피난 완료 학생수, 미 대피 학생들이 있는 반 위치등 상황을 통보
- 6) 교육소방관은 각급학생들에 대한 대피완료시간, 대피방법, 대피동선 선정등에 대한 강평



■ 화재대피 훈련 시나리오

단계	시간	훈 련 내 용		
준비 단계		진행	교사역할	담당
		대피시 장애 요인 제거	소방차 진입 라인 그리기 복도,계단,출입구등에 대한 장애물 확인	학년부장
		방송장비점검	본관,신관,동관,체육관,운동장 방송 여부	특활부장
		훈련전 피난 방법 교육	1. 사이렌이 울리면 창문열기(담당학생) 2. 하던일을 멈추고 입과 코를 막음(실내화) 3. 장애아동 도우미 역할 확인 4. 복도에 피난방향으로 옆드려 대기(4열종대) 5. 대피도에 따라 순서대로 침착하게 피난함. -자세 : 입과 코를 양손(손수건, 옷)으로 막고 허리는 90° 구부림(진지한 참여자세 지도) -전교실에 방송실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동영상등으로 화재시 취해야할 행동 및 피난요령등을 교육 6. 현관을 나온 후에는 뛰어서 대피 집결 장소로 이동 7. 집결장소에 2열종대로 앉음(소음지도)	담임
		연기발생기 점화	가상화재 발생장소에서 점화	○○○
시작	1	가상화재 메세지 전달	과학실(급식실)주변에서 불이야 3회 외치기	발견자
		화재발신기 작동	화재 발견자	
훈련 방송	1	화재방송실시	- 이 방송은 화재대피 훈련방송입니다. - 지금 동관1층 과학실(본관 급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 각 반 선생님께서는 아동들을 건물밖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차 진입을 위해 교문을 열어 주시고 대피유도 요원은 대피장소를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	시간	훈 련 내 용	
대피 실시	13	소방차 진입로 확보	교문열기 대피유도요원 활동 : 학년별 대피 장소 유도 ○○○
		대피실시	1. 각반 담임은 모든 수업을 중단 2. 아동에게 피난후 집결장소를 알려줌 3. 창문이 열렸나 확인 4. 아동명부를 지참하고 복도에 대피방향을 엮드려 대기(입과 코를 막고4열 종대) 5. 대피도에 따라 순서대로 침착하게 피난함. - 자세 : 입과 코를 양손(손수건, 옷)으로 막고 허리는 90° 구부림(진지한 참여자세 지도)  - 장애아동관리 : 도우미 아동 활동 점검 : ○년○반 신체장애(○○○), 행동장애(○○○) 6. 현관을 나온 후에는 뛰어서 대피집결 장소로 감 7. 집결장소에서 2열종대로 앓음. 8. 출석을 확인한 뒤 학년부장에게 신고 (미 대피아동 수 및 피난위치) 각 반
피난 실시	13	훈련방송	- 본간 3층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아동은 비상탈출로를 이용하게 바랍니다. - 침착하게 행동하고 안전하게 탈출하기 바랍니다. ○○○
		비상탈출	○학년 아동 시범조
		훈련방송	- 모두 무사하게 탈출에 성공하였습니다. - 이어서 환자가 발생한 학급에서는 응급구호소로 환자를 이송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구호소 설치	팻말설치 이송침구 확보 및 구급상자 확보 119소년단 활동 ○○○

단계	시간	훈 련 내 용		
대피 완료	3	훈련방송	- 대피상황을 교감선생님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완료	1. 대피인원 파악후 교감선생님께 피난인원을 보고 2. 교감선생님은 소방관에게 대피인원, 대피하지 못한 인원, 미 대피자의 위치 등을 통보	각반
		구조활동	대피하지 못한 아동은 소방관이 구조	출동한 소방관
집결	3	훈련방송	- 오늘 훈련상황에 대한 강평이 있겠으니 아동들은 앞쪽으로 이동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정 령	각 반 아동들과 선생님들은 조희대 쪽으로 이동	각 반
강평	4	강 평	교육담당소방관이 각 아동들의 대피 행동시 문제점, 대피시간초과, 대피동선등에 대한 강평	○○○
입실	10	훈련방송	- 이상으로 화재대피훈련을 마치겠습니다, 각 학급은 교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정 리	1. 질서있게 교실로 입실 2. 소감발표 및 소감문 작성(과제제시)	각 반

별지 7 승강기 내 간힘 발생시 행동요령

승강기 사고발생시 관리주체 행동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발생 위치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태 등에 대해 확인 후 119구조대와 유지관리업체에 신고 •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 흥분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을 시키고 119구조대(유지관리업체)에 신고 사실 안내 •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승강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사고현장에 일반인이 접근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예: 안내방송 실시, 차단막 설치) 실시 • 비전문가가 무리하게 구조하려고 하던 중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판단하여 직접 구조작업을 하지 말고 전문구조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 • 119구조대(유지관리업체) 도착 시 사고 상황을 전파하고 비상키(기계실·승강장문 개방열쇠) 전달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Ⅲ. 교육시설 안전관리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시설물 안전관리

I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① 관련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② 주요내용

1.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실시
2. 해당년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3.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해빙기, 동절기)
4. 수시 안전점검(재난발생 빈번 시기)

II 안전점검

평상시 육안조사	계절별 주요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지표면 상태 ◦ 작용하중 상황 ◦ 부동침하, 변위·변형 ◦ 콘크리트 강도(필요시) ◦ 균열 ◦ 콘크리트 및 강재의 노후화현상 ◦ 강재의 도장 및 내화피복 상태 ◦ 강재접합부의 상태 ◦ 부대시설 상태 ◦ 주변 환경 변화 	해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축·옹벽의 이상 유무 ◦ 건물의 부동침하 상태 ◦ 건축물 주변지표면 상태 ◦ 변위·변형 발생 유무 ◦ 균열·손상 발생 유무
	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지하실의 방수 상태 ◦ 배수로 상태(건물주변, 옥상 등) ◦ 건축물 외부 부착물 상태 ◦ 석축·옹벽의 이상 유무 ◦ 건축물 주변지표면 상태 ◦ 변위·변형 발생 유무 ◦ 균열·손상 발생 유무

III 시설물 주요 점검사항

1. 바닥 포장부위 침하 및 균열의 발생 여부 확인
2. 건물전체의 부동침하 현상 확인
3. 외벽의 전도위험 부위 여부 확인
4. 외벽 모르타르 및 타일의 탈락 부위 여부 확인
5. 옥상 배수구(Roof Drain)가 막혔는지 확인
6. 옥상에 하중(물건)의 과적 여부 확인
7. 옥상과 파라펫의 균열 발생 확인
8. 외벽 벽돌줄눈의 경사방향의 균열 여부 확인
9. 돌출물(간판, 안테나) 등의 탈락 현상 확인
10. 천장재의 탈락 및 갈라짐 상태 확인
11. 주요 구조체의 균열발생 여부 확인
12. 외부 석재에 균열 또는 변형 유무 확인
13. 수직피난통로(계단) 안전난간의 견고성 확인
14. 담장의 전도 징후 여부 확인
15. 경량철골조 지붕구조의 변위·변형 상태 확인
16. 담장, 석축, 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발생 확인

IV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 조치사항

1.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에 균열이 있을 경우
 - 균열발생 부분이 미장면인지 구조체인지 확인
 - 구조체 균열이 3mm 이상이면 전문가에게 점검 요청
2. 교사동 주변에 지반이 침하된 경우
 - 침하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건물 기초부분까지 침하되었을 때는 전문가의 진단 받기
3. 현관이나 내부의 천장재가 탈락된 경우
 - 천장틀을 보수·보강하고, 클립 외에 고정나사 설치 고려
4. 바닥 플로어링이 부풀어 오를 경우
 - 습기 제거를 위하여 바닥에 환기구 설치

5. 교사동 벽체의 페인트 면이 벗겨진 경우
 - 벗겨진 면 안에 도장면이 또 있다면 긁어내고 재도장
6. 비가 온 후 창호 주변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 창호틀 주변의 코킹 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코킹재를 밀실하게 재시공
7. 건물과 건물의 연결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 건물과 건물의 연결부분을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밀실하게 시공
8. 교사동 외벽 드라이비트(외단열)이 파손 및 탈락된 경우
 - 모서리, 바닥부분은 보강재를 넣은 외단열재로 재시공
 - 탈락된 부분을 재시공할 경우 반드시 고정철물을 설치
9. 화재로 인하여 콘크리트가 훼손된 경우(전문가가 시행)
 - 콘크리트가 박리, 박락되고 철근이 노출된 경우 정밀안전진단업체에 점검 의뢰



전기시설 안전관리

I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① 관련법규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② 교육시설 전기설비 구분

1. 교육시설 전기설비는 한국전력과의 계약용량 규모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로 구분하고,
2. 전기공급원 종류에 따라 ‘일반·심야용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로 구분하는데 그 세부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일반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일반 수전설비	수전전압 600V 이하로서 계약용량 75kw 미만	계약용량 75kw 이상
심야 수전설비	수전전압 600V 이하로서 계약용량 100kw 미만	계약용량 100kw 이상
발전 설비	발전전압 600V 이하로서 발전용량 10kw 이하	발전용량 10kw 초과

③ 교육시설 전기설비 검사

1. 교육시설 전기설비는 계약용량 규모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3가지 형태의 검사를 모두 받아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전기안전점검(대행)
검사 대상	자가용 전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고압 자가용 전기설비 ◦ 75kw 이상의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중 ◦ 계약용량 1,000kw 미만 ◦ 발전용량 300kw 미만 ◦ 비상용 예비용량 500kw 미만
검사 주체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대행업자
검사 횟수	자가용 전기설비 설치공사 완료 직후	2년마다 2월 전후	매월 1~4회
검사 내용	시공 상태 적합 여부 검사	유지·운용 상태 적합 여부검사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
검사 신청	검사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용전 검사 신청서를 안전공사에 제출	검사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정기검사 신청서를 안전공사에 제출	점검대행기관과의 점검용역 계약체결에 의함

2. 교육시설 ‘전기안전점검’ 대행시, 학교관계자는 전기설비 규모에 따라 점검 대행기관이 매월 1~4회 방문하여 점검하도록 점검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3. 자가용 전기설비로서 계약용량이 1,000kw 이상이거나 발전용량이 300kw(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500kw) 이상일 경우에는 ‘전기안전점검’ 대행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전기안전관리사를 채용하여 교육시설에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규모 (수전설비+발전설비)		점검 횟수
저압	제한 없음	매월 1회 이상
	300kw 미만	
(특)고압	500kw 미만	매월 2회 이상
	700kw 미만	매월 3회 이상
	1,500kw 미만	매월 4회 이상
	1,500kw 이상	전기안전관리사 채용

II 전기시설 주요 점검사항

① 점검업체에서 ‘전기실 수변전설비’ 점검시 확인사항

1. 전기실 및 특고압기기 외함의 청소 상태
2. 특고압기기 및 배전반 차단기의 내용 연수 경과 여부
3. 유입식 특고압기기의 누유 및 팽창 여부
4. 누전경보기 누전 검출 여부
5. 배전반 선로별 과부하 발생 여부

② 점검업체에서 ‘기계실 동력반’ 점검시 확인사항

1. 제어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
2. (소방)펌프의 정상 작동 여부
3. 동력기기(펌프, 팬)에서의 누전 발생 여부
4. 콘덴서의 누유 및 팽창 여부
5. 제어기기 및 동력기기의 부식, 노후 여부

③ 점검업체에서 ‘각 층 분전반’ 점검시 확인사항

1. 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2. 단자부 정상 접속 여부
3. 선로별 과부하 발생 여부
4. 선로별 누전 발생 여부
5. 함 내에 물기 침입 또는 금속물질 방치 여부

④ 매일 전기시설 안전관리 실시

1. 건물 각 실별 전기안전순찰 실시
2. 파손된 전기시설은 즉시 개·보수
3. 전기시설에 이상 발생시 점검업체에 신고
4. 최종퇴실 확인 후 분전반 차단기 차단
5. 일일 전기안전순찰 기록부를 작성·기록

⑤ 매월 전기시설 안전관리 실시

1. 월 1회 차단기 작동시험 실시
2. 월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고 분석
3. 점검업체 정기점검시에 입회
4. 지적된 전기시설은 신속하게 개·보수
5. 전기제품 보급시 사전에 전문가와 전기안전 상담

⑥ 매년 전기시설 안전관리 실시

1. 전기 계약용량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사용 가능 연한이 경과한 전력기기 교체
3. 해빙기 심야 축열난방기 미사용시 심야전력 차단기 차단
4. 점검업체를 통해 수변전설비를 청소하고 정밀점검 실시
5. 점검업체를 통해 분전반 선로의 누전 여부 측정

Ⅲ 전기시설에 이상이 있을 때 조치사항

① 전기설비가 정전되었을 경우

1. 학교 전체가 정전되었을 경우에는 한전으로부터의 정전인지 여부 확인
2. 교내 일부범위가 정전되었을 경우에는 분전반의 차단기가 떨어졌는지 확인
3. 교내 차단기가 떨어졌으면 차단기를 함부로 복구시키지 말고 관리자를 통하여 먼저 전기설비의 이상 여부 확인
4.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전이 되면 TV나 등기구가 작동하지 않으므로 건전지용 라디오와 손전등을 미리 준비

② 학교건물·운동장이 침수되었을 경우

1. 집중호우 등으로 교내 운동장·도로에 빗물이 범람할 경우에는 옥외가로등의 전원을 모두 차단하여 감전 사고 예방
2. 빗물이 범람하여 건물 내부로 유입할 경우에는 지하층과 1층에 위치한 분전반의 차단기 차단
3. 물이 빠져나간 후에는 반드시 전기점검기관에 연락하여 누전 여부 확인
4. 양수모터, 모터연결용 케이블을 미리 준비하여야 하며,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의 위치 숙지

③ 벼락이 발생할 경우

1. 벼락을 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건물이나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몸에 지니고 있는 금속체는 몸에서 멀리 분리
2. 수도꼭지, 싱크대 등의 금속체를 만져서는 안 되며, 전화 등의 통신장비는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 금지
3. 벼락발생시 전력선·통신선을 통하여 고강도의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전기 제품이나 통신장비(전산서버, 키폰 주장치 등)의 선로를 뽑아 두고, 전기·통신 제품으로부터 1m 이상 거리 유지

소방시설 안전관리

I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

①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8조

면적·소방시설 설치
여부 관계없음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② 국·공립학교 전체
- ③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②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구분	선임시기
신축 등으로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으로 재선임하는 경우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별도의 통보 절차 없음

※ 기관장은 위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소방시설업자에게 방화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포함]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 통보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란?** 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 19조3항에 의하면 행정실장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행정실장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단, 소방시설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행정실장이 아니어도 무방함)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기관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화관리업무의 최종적인 책임은 기관장에 있음
2. 주요 업무
 - ①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통보
 - ② 소방계획의 작성
 - ③ 자위소방대의 조직
 - ④ 소방훈련 및 교육
 - ⑤ 소방시설 및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⑥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받을 의무
 - ⑦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④ 자위소방대의 작성 및 임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3조

1. 조직 :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
 - ① 반 편성시 가급적 동일 부서 및 동일 학년의 선생님을 피해 분산하여 편성
 - ② 조직표를 부서 및 교무실 등에 부착하여 개인별 임무 숙지
2. 구성 : 대장·부대장 각 1인과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 편성

⑤ 소방 훈련 및 교육의 실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1.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 실시
2.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훈련 및 교육 결과자료는 2년간 보관
3. 상시 근무인원 10명 이내 기관은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⑥ 소방점검의 실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구분	자체점검	종합정밀점검
점검주기	월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점검서식	소방시설외관점검표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
점검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업무대행자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결과	자체 기록 보관(2년)	30일 이내 관할소방서 제출

II 소방시설 주요 점검사항

1. 소화기 설치장소에 소화기표시 여부
2. 소화기 용기본체의 도장이 벗겨지거나 부식 여부
3. 소화전의 위치표시등 점등 여부
4. 옥내·외 소화전 수원 정량 확보 여부
5. 소화전함, 펌프, 전동기 주위에 장애물 유무
6. 소화전함, 호스, 노즐, 배관, 관부속류 등이 변형, 손상 부식 여부
7. 각 밸브의 개폐조작 용이
8. 화재 수신기가 있는 장소에 경계구역 일람표 비치 여부
9. 수신기 조작부 스위치 정상위치 여부
10. 감지기는 유효하게 화재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지 여부
11. 수신기 비상전원의 방전 여부
12. 수신반의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시 이상유무
13. 피난기구의 사용법 표시여부
14. 피난기구 및 고정 장치의 노후, 파손, 변형여부
15. 비상구의 문은 밖으로 열게 되어 있으며 용이하게 개방되었는지 여부
16. 통로에 피난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방치여부
17.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파손, 변형, 탈락 여부
18. 스프링클러 배관 및 헤드의 유수 여부
19. 배관의 동결 또는 부식 우려가 있는 부분에 보온, 방호조치 여부
20. 헤드 주위에는 살수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여부
21.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차광 및 환기 설비 이상 유무
22. 가연성 가스시설에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 정상적 동작 여부

II 소방시설에 이상이 있을 때 조치사항

1. 각 실 화재감지기가 오동작 했을 경우
 - ① 화재수신반에서 주경종, 지구경종을 정지시킨 후 수신반에 표시된 지역으로 이동하여 동작된 감지기 분리
2. 화재수신반 주경종 및 각층 지구경종이 동작했을 경우
 - ① 수신반에서 주경종, 지구경종을 정지시킨 후 해당 지역에서 화재발생시 초기 진화 시도
 - ②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복구 스위치를 누른 후 경종버튼 원상 복구

3.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비상방송이 동작했을 경우
 - ① 수신반에서 비상방송 스위치를 눌러서 방송을 정지시키거나, 비상방송 앰프의 전원 차단
4. 소화펌프 동작 및 화재수신반 펌프의 기동 확인 램프가 점등했을 경우
 - ① 수신반에서 펌프를 정지한 후 펌프 동작 상태를 점검
 - ② 수신반에 펌프 정지버튼이 없는 경우 펌프의 전원 차단
5. 각 층의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이 폐쇄되었을 경우
 - ① 수신반에 신호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복구 스위치를 눌러서 복구
 - ② 폐쇄된 지역으로 이동하여 폐쇄된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눌러서 복구
6. 피난구유도등이 점등되었을 경우
 - ① 수신반에서 화재신호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복구 스위치를 눌러서 복구
 - ② 화재신호가 복구되면 유도등은 자동으로 소등
 - ③ 수신반에서 수동으로 동작시킨 경우 스위치를 정지 상태 세팅
7. 스프링클러설비 사이렌이 동작하거나 헤드에서 물이 나올 경우
 - ① 수신반에서 사이렌 정지스위치를 눌러서 정지
 - ② 물이 나오는 층으로 이동하여 알람밸브실을 찾아 밸브를 잠근다.
 - ③ 소방전문업체에 연락
8. 각 층의 소화전배관이 파손되어 물이 새는 경우
 - ① 소화펌프실로 신속히 이동
 - ② 소화펌프 토출측 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잠근다.
 - ③ 지하층 또는 1층 소화전 호스를 외부로 연결하여 배관내 물을 배수시키고 전문업체에 연락하여 보수



가스시설 안전관리

I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도시가스시설)

① 관련법규

「 도시가스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② 주요내용

1. 월사용 규모별 관리내용

월사용량	안전관리자 (시행령 제15조제3항 별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시행규칙 제64조)
3,000m ³ 미만	안전관리총괄자 1인	의무 아님
3,000m ³ 이상 4,000m ³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인	의무가입
4,000m ³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인 안전관리책임자 1인	의무가입

2. 안전관리자

- ① 안전관리총괄자 : 학교장(당연직)
- ② 안전관리책임자(규칙 제50조) :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3.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법 제29조)

- ① 신고처 : 시·군·구청장
- ② 최초신고 : 시설 사용개시 전
- ③ 전임자 해직·사직·전보로 인한 신고 : 변경 후 30일 이내 선임

4. 시설의 설치·변경 공사시(법 제12조 내지 제15조)

- ① 공사계획수립 ⇨ 계약 ⇨ 기술검토 ⇨ 공사 ⇨ 완성검사 신청

5. 정기검사 (규칙 제25조) : 한국가스안전공사

- ① 최초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날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6. 정밀안전점검 : 한국가스안전공사

- ① 법정정기검사와는 별도로 신청, 점검 받음으로써 가스안전 상황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음
- ② 1년에 2회 이상 점검을 받을 경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7. 단독정압기 관리(※참고. 시행규칙 【별표 6】)

- ① 1주일에 1회 이상 작동점검
- ② 필터는 가스공급개시 후 1개월 이내, 가스공급개시 후 매년 1회 이상 분해점검
- ③ 정압기는 설치 후 2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

II 관련법규 및 주요내용(액화석유가스시설)

①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② 주요내용

1. 대상시설 :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제1종 보호시설(규칙 제2조, 모든 학교 포함)
2. 저장능력별 관리내용

저장능력	안전관리자 (시행령 제5조제3항 별표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시행령 제16조)
250kg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1인	의무가입
250kg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1인 안전관리책임자 1인	의무가입

- ① 안전관리총괄자 : 학교장(당연직)
 - ② 안전관리책임자(시행령 제5조) :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3.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신고(법 제16조)
 - ① 신고처 : 시·군·구청장
 - ② 최초신고 : 시설 사용개시 전
 - ③ 전임자 해직·사직·전보로 인한 신고 : 변경 후 30일 이내 선임
 4. 정기검사(법 제19조) : 최초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III 가스시설 주요 점검사항

① LPG 저장설비의 설치·관리시 확인사항

1. 저장설비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를 피하여 옥외에 보관 여부
2. 용기 저장능력이 100kg을 초과할 경우 불연성재료로 용기 보관실 설치 여부
3. 용기보관실은 통풍구 또는 강제 통풍시설을 하고 경계표지 설치 여부
4. 저장용기는 차양, 부식방지, 전도방지 조치 여부
5. 저장설비 및 배관(건축물 내부에 설치한 배관을 제외한다)은 화기취급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 유지 여부

② 배관의 설치·관리시 확인사항

1. 저장설비로부터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은 강관·동관 등 금속관 사용 여부
2. 배관(LNG 실외 지하 매설배관 제외)은 노출하여 시공하였는지 여부.
3. 건물 내의 배관은 노출하여 시공하였는지 여부.
4.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은 보호관 및 부식방지 피복 여부
5.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여부
6. 배관의 이음부는 전기계량기·전기개폐기와 60cm, 전기접속기와는 30cm,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15cm 이상 거리 유지 여부
7. 고무호스 길이는 연소기까지 3m 이내로 하되, T형 분기를 하지 않는 여부
8. 연소기 각각에 대하여 퓨즈콕 등의 배관용 밸브 설치 여부
9. 배관이 분기되는 경우에는 주 배관에 배관용 밸브 설치 여부
10. 가스누출 자동 차단장치 등 설치 여부
11. 가스경보기 설치시 LPG는 바닥에서 30cm 이내, LNG는 천정에서 30cm 이내로 설치하며, 가스 누출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여부
12. 해빙기 지반 침하로 인한 배관 파손 확인
13. 장마철 침수대비 용기 밸브 잠금 및 안전한 장소에 고정 여부

IV 가스시설에 이상이 있을 때 조치사항

① 가스 누출시 응급조치 요령

1.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가 동작했을 경우
 - ① 가스 누설감지기가 동작하면 경보음이 울리며 차단부가 동작된다.
 - ② 가스가 누출된 경우 차단기 동작 상태를 확인하고 중간밸브를 잠근다.
 - ③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 후 가스안전공사에 연락한다.
 - ④ 가스안전공사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한다.
2. LPG나 도시가스를 흡입한 경우 산소결핍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선한 공기가 통하는 장소로 옮기고 호흡 곤란시 인공호흡, 산소흡입 등을 실시한다.
3. LPG에 의한 동상시 냉수 등으로 서서히 따뜻하게 한다.
4. 화상을 입은 경우 냉수 등으로 충분히 식힌 후 신속히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별지 1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대장(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점검)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대장

결 재	담당자	행정실장	교 장

학교명: _____

점검일: _____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양호,요수리 등)	미비사항
○ 건축분야		
- 건물기초 및 바닥부분의 침하 여부		
-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 옥상 스라브 및 파라펫의 균열 여부		
- 옥상 환풍 주변 청결 상태 확인		
- 외벽(드라이비트 포함) 균열, 탈락, 코킹 등 상태		
- 계단, 복도 등 대피로 물건적치 및 변형 확인		
- 계단 난간 및 핸드레일 파손, 탈락 확인		
- 지하층 균열, 누수 여부 및 집수정 배수펌프 작동 적정 여부		
- 창문 개폐의 원활 성 및 문틀 틈새 벌어짐 여부 확인		
- 천장재 및 마룻바닥이 부풀어 오르거나 탈락된 곳 확인		
○ 시설물분야		
- 옹벽·담장·석축·웬스의 균열 및 기초침하·기울어짐 여부		
- 절개지 및 비탈면의 균열 및 지하수 유출 여부		
- 강우 시 옹벽 물구멍에서 물이 나오는지 여부		
- 옹벽 기울거나 석축의 배가 불러 나오는지 여부		
- 맨홀 및 배수로에 퇴적물이 많이 쌓였는지 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 위험성		
- 경계석 및 보도블럭, 배수로 파손상태		
- 광고판 안전성, 옥상 물탱크·물건 적치 등 과하중 상태		
- 대문의 개폐상태 및 기동 상태		
○ 전기 분야		
- 전기설비 정기검사 여부(지적사항 조치여부 확인)		
- 심야 축열식 온풍기 관리가 적정한 지(하부 먼지 제거)		
- 배선기구 이탈 및 접촉상태 여부		
- 전기 배선 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 비상 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 여부 등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양호,요수리 등)	미비사항
○ 소방 분야		
- 정기검사 여부(지적사항 조치 여부)		
- 방화문, 방화셔터 등 정상 작동 여부		
- 교사동 각 층 소화전에 피난유도 계획도 부착 및 피난구 확보 여부		
- 소화기 비치 및 충약 상태 여부(1실당 1개, 33㎡당 1개)		
- 화재수신반 스위치(주경종, 지구경종 동작) 정상 여부		
- 소화펌프 운전스위치 정상 상태 여부		
- 전열기, 가스레인지 등과 가연물은 이격되어 있는지 여부		
- 소방수신기 정상적 작동여부		
1. 주경종 및 지구경종을 우선 누르고		
2. 도통시험버튼을 누르고 회로시험스위치를 돌려 선택된 눈금이 정상상태를 가리키는지 확인		
3. 동작시험버튼을 눌러 회로시험스위치를 돌려 램프등이 안켜진 곳이 있는지 확인(작동불량 확인)		
4. 1, 2, 3번 시험 후 화재자동복구 버튼을 누른 후 램프 표시등이 꺼진 것을 확인 후 주경종, 지구경종, 도통시험, 동작시험 버튼을 눌러 원상복구 시킨다.		
- 화재 대비 소방훈련계획 및 방재계획 수립여부		
- 각 실별로 화재예방 점검표 비치 여부		
- 비상시 대피 훈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연4회)		
※ 연인원 : 학교 총인원(교직원 포함)	연인원(명)	
순인원 : 소방훈련을 받은 대상인원	순인원(명)	
○ 가스시설 분야		
- 경보, 차단설비 작동 및 주변 환기 상태		
- 가스공급 조절장치 이상유무		
- 가스배관 고정 및 도색불량 여부		
- 중간밸브 위치불량 및 미설치 여부		
- LNG시설, LPG시설, 유류저장시설, 보일러실 등 대한 점검		
- 가스공급 조절장치 이상유무		
- 보일러 배기통은 막히지 않고 배기가스가 잘 배출 되는지		
-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등의 전원은 항상 공급 되는지		
○ 승강기 분야		
- 정기검사 유무(지적사항 조치 여부)		
- 기계실 제어반 및 콘트롤반 이상유무		
- 브레이크, 가바나 작동상태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양호,요수리 등)	미비사항
○ 승강기 분야		
- 카도어 및 승강장도어 안전장치 작동 여부		
- 각종 도어스위치 및 인터록, 메인로프 장력 점검		
- 착상상태 및 운행중 소음 및 진동상태 점검		
- 비상 통화장치 이상유무		
○ 냉난방 공조 설비 분야		
- 보일러 및 덕트 정기점검 및 관리실태		
- 환기구 적정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 에어필터의 청소 상태 및 설비배관 파손여부		
- 취출구 및 흡입구의 청소상태		
- 냉각코일 및 온수코일 누수여부		
- 제어반의 정상작동 상태여부		
○ 공사장		
- 건기법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점검실시여부		
- 호우에 대비한 배수처리 기능(유수지, 가배수로 설치) 확인		
- 절개지 토사유출 방지시설의 적정성 여부		
- 공사장내 가 저류지 등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여부		
- 공사장내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입 금지 조치		
- 공사장 가설 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		
: 굴착, 흙막이 시공 시 안전 조치 여부(지하수위, 지질 및 흙막이 구조)		
: 비계동바리 등 가설재료의 비산방지 및 낙하방지 설치 여부		
: 작업발판은 미끄럼 방지 및 쌍줄비계 설치 여부		
: 비계발판의 손상이나 위험하게 돌출된 곳이 있는지 여부		
: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이 2m이하에 설치된 지 여부		
: 비계기둥간격 보 방향 1.5-1.8m, 간 사이 방향 1.5m이하로 설치된지 여부		
: 강관은 균열, 비틀림 등의 변형 및 부식 여부		
- 목재, 휘발성 도료 등 인화성 물질의 보관상태 점검		
○ 기타 시설		
-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 년 1회 이상 청소를 하는지 여부		
: 오수처리시설의 기계작동은 원활한가?		
- 기타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양호,요수리 등)	미비사항
○ 화재취약시설(선수휴게소, 기숙사, 숙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 여부 및 대피로 2개소 이상인가 - 대피 로에 물건 적재 및 내부시설 개조 여부 - 내부 마감재로 구성(바닥, 벽, 천정)이 난연 및 불연인지 - 방범창 설치 여부 - 가스·전기·소방시설의 정기점검 및 이상유무 여부 - 위험물(석유류 탱크) 관리상태 - 소화기의 비치(주출입구옆 눈에 띄는 곳) 여부 및 충약 상태 - 불필요한 가연물(폐지, 폐박스, 교실의 쓰레기 등) 방치 여부 - 개인 전열기구 사용 여부(금지) - 사용한 전기기구는 플러그를 뽑아 놓고 퇴실하는지 여부 		
○ 화재취약시설(체육관, 강당, 급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감지기 작동시 당직실의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체육관(강당)은 별도의 분전반을 설치하여 관리 - 체육관(강당)을 사용한 후에는 전원을 차단하는지 여부 - 조리원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을 매월 실시하는지 여부 - 급식실의 자동확산소화기는 화기가 있는 조리기 상부마다 설치되었는지 여부 		
○ 청소년수련시설(야영장포함) - 해당기관만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및 운영사항(비상연락망 / 청소년지도사 배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보험가입) 확인 - 시설물 점검 사항(구급약/소방차진입확보(4m)취사, 음용수 수질상태) -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기준(안전교육/각종시설 정기점검 /시설이용방법/비상,대피로 표시등)상태 점검 - 기록의 유지관리 대장 비치(등록서류/직원명부/방재계획수립여부, 재해대비 비상급수 및 양수기 확보여부/대피소 확보 유무) 		
○ 전월 미비사항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당월 미비사항 조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2

여름철 안전점검 대장(여름철 재해대책기간중 점검)

여름철 안전점검 대장

결재	담당자	행정실장	교장

학교명: _____

점검일: . . .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	미비사항
-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비상연락망(교직원, 학생, 학부모, 주민자치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 재정비		
- 기상청 태풍·집중호우 예경보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지 여부		
- 교직원 및 학생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교육 여부 (집합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홈페이지 탑재)		
- 학교부지의 매물, 유실, 건물의 파손 여부 점검		
- 기초 및 현관 바닥부분 등 침하 여부 점검		
- 학교주변 절개지(토사 유출, 균열 발생여부) 점검		
- 학교운동장의 통행로 점검		
- 노후시설 점검(캐노피, 외벽, 담장 및 구조체 등 균열 및 탈락)		
- 옥상 방수 미비로 인한 천장 누수 여부		
- 지하 건물 누수 및 침수 여부 점검		
- 옥상, 운동장 등 배수로, 흙통 주변 청소 상태		
- 우천시 배전판 누수 여부 확인 점검		
- 옥외구조물(실외기, 표지판, 차양시설 등) 상태 점검		
- 양수기, 물막이 등 침수 방지시설 및 수방자재 비축여부 점검		
- 공사장 관리 점검 (굴착사면, 배수로 및 가설물 관리상태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방지대책 등)		
- 태풍시 수목 관리 철저 (전도 위험한 가로수 지지목설치, 가지치기 실시 여부 등)		
- 재난위험시설물 표지판 주 출입구 설치 여부		
- 학교 내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		
- 기타 재해발생 요인 점검		
※ 점검결과 미비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계획 수립		
○ 점검결과(종합)		
○ 조치사항		

별지 3

겨울철 안전점검 대장(겨울철 재해대책기간중 점검)

겨울철 안전점검 대장

결재	담당자	행정실장	교장

학교명: _____

점검일: _____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	미비사항
-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비상연락망(교직원, 학생, 학부모, 주민자치센터, 소방서, 경찰서 등) 재정비		
- 기상청 대설·한파 예경보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지 여부		
- 교직원 및 학생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교육 여부 (집합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홈페이지 탑재)		
- 펌프 작동 상태 및 물탱크 시설 관리 철저		
- 옹벽, 축대, 담장 안전점검		
- 각 사무실 및 복도에 설치된 소화기 점검		
- 자동화재 탐지기용 수신기 작동 상태 점검		
- 분전반 상태 점검		
- 콘센트 먼지 제거 및 문어발식 콘센트 점검		
- 개별 전열기구 제거 및 안전점검		
- 화장실 동파 방지용 전열기 점검		
- 보일러실 배관 동파 방지 점검		
- 출입구, 지붕, 옥상, 캐노피 연결 통로 눈을 치우고 있는지 여부		
- 학교 내 도로, 인도, 주차장의 눈은 치우고 있는지 여부		
- 학교 주변 빙판길에는 영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렸는지 여부		
- 옥상이나 외벽 처마의 고드름 제거 여부		
- 조경수가 부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쌓인 눈 제거 여부		
- 제설장비·인력·자재(영화칼슘, 모래 등)를 점검하고 적재적소 배치여부		
- 학교 내 위험지역(붕괴, 눈사태 등) 접근금지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		
- 기타 재해발생 요인 점검		
※ 점검결과 미비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계획 수립		
○ 점검결과(종합)		
○ 조치사항		

별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대장(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대장

결재	담당자		교장

학교명: _____

점검일: _____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양호,요수리 등)	미비사항
○ 부대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 놀이터 공통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 놀이터안의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상태		
- 기구 및 시설의 도장 상태		
○ 그네		
- 그네고리('S' 혹)의 풀림 및 파손		
- 그네 좌석판의 파손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 그네 줄의 꼬임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 금이 간 곳의 존재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양호,요수리 등)	미비사항
○ 미끄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녹슨 부분은 없는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이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 흔들 놀이기구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 손잡이가 흔들림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기구의 금이 간 곳		
- 페인트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 회전 놀이기구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 손잡이의 파손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 회전축이 강도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세 부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양호,요수리 등)	미비사항
○ 정글짐·건너는 기구		
- 파이프가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금속부분의 녹슴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 오르는 기구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영김, 벗겨짐)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 매달리는 기구·공중놀이 기구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 전월 미비사항 조치결과		
-		
○ 당월 미비사항 조치계획		
-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IV. 안전점검의 날 추진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안전점검의 날 추진

I 법적근거 및 주요내용

① 법적근거 및 개요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안전점검의 날 등)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조(안전점검의 날 등)
3. 일시: **매월 4일**(공휴일·일요일인 경우 다음날 실시)
4. 주요내용 : 실험·실습실 등 교육현장의 위험요소별 안전점검 실시
5. 참여대상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지역 소속기관, 각급학교

② 주요내용

1. 계획 수립
 - 기관별 「안전점검의 날」 행사 ① 연간계획 수립(매년 1월까지)하고, ②월별 세부계획 수립
 - 연간계획 수립시 매년 1월초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계획 참조
※ **참고. '안전점검의 날' 월별 주요 실천과제 【별지 1】**
 - 월별 시행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재난안전 교육훈련, 홍보, 취약분야 안전점검 등을 반영하여 수립
2. 재난안전 교육훈련
 - 학교 : 계절별, 월별 재난안전과 연계된 내용으로 재난 관련 교육 실시
 - 교육청 및 직속기관 : 계절별·월별 재난안전과 연계된 내용 위주로 기관장 책임 하에 집합교육, 분임토의, 세미나, 초빙교육 등 실시
3. 재난안전관련 홍보
 - 월별 실천과제 중심으로 실시

❖ 일 반	: “예방없이 안전없고 안전없이 행복없다.”
❖ 겨울철(설 날)	: “따뜻하고 안전한 설명절 보냅니다.”
❖ 봄 철(해빙기)	: “따뜻한 봄맞이! 해빙기 안전점검으로부터”
❖ 봄 철(행락철)	: “행락철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 어린이날(5월)	: “어린이는 미래의 주역!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 여름철(물놀이)	: “안전한 물놀이! 가족사랑의 시작입니다.”
❖ 가을철(추석절)	: “즐거운 추석! 안전이 먼저!”
❖ 가을철(단 풍)	: “산악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 겨울철(동절기)	: “겨울맞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 학교 》

- SNS, 입간판, 현수막, 게시판, 교내방송, 알림장, 가정통신문, 조례·종례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
- 매월 실천과제 및 지역특성에 맞게 세부행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관장 솔선 참여
- 기관별 노후취약지역 건물·시설·지역을 선정하여 지역 안전전문가·민간단체·유관기관·행정기관 합동참여
- 기관에서는 지자체, 소방서 및 경찰서, 민간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주변 위험 요소(예: 학교주변 교통사고 다발지역)를 발굴·정비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참여자 격려 및 지도

《 교육청 및 직속기관 》

- 직원 및 대국민 대상으로 한 홍보 실시
- 홍보방법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실시

4. 안전점검

① 계절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취약 시설 및 월별 재난취약분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학교 》

- 계절별 월별 자연재난(집중호우, 태풍, 황사, 폭염, 폭설, 화재 등)에 대비한 학교건물, 담장, 놀이·체육시설 등 안전상태 점검 실시
- 기타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육관, 급식시설, 실험실 등 중점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안점점검 실시
-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건축전기·가스 분야에 유지보수 업체 및 자원봉사단체를 적극 참여시켜 안전 활성화
- 기초적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점검의 날」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각급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안전교육자료 참고 사이트	
<p>📄 한국소방방송 홈페이지(http://fire.go.k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인페이지 목차 “119아카데미” 에서 “소방교육센터” - 연령대별/사고유형별 “안전교재 및 영상물” 다운로드 	
<p>📄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인 페이지 우측 “안전교육” 베너 클릭 - “국민안전 행동요령” 영상물 다운로드 	

- 학교 내 안전교육 담당교사와 함께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 테마를 선정, 자체 안전 프로그램 개발 촉진

📄 어린이 안전학교(www.go119.org)의 안전교실 사이버 교육 체험

※ 참고. 소방안전체험관·이동안전체험차량 현황 **【별지 2】**

《 교육청 및 직속기관 》

- 계절 별 자연재난과 학생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소관 야영장, 수덕원, 기숙사, 운동부 합숙시설, 도서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안점점검 실시
- 기관별 지역의 각 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 민간단체 적극 참여 촉진 및 유관기관의 수범사례 등 적극 발굴 홍보 및 전파

②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 민간단체의 참여 촉진

- 시·도/시·군·구에서 추진 중인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교육기관과 공동 기획, 국민의 관심 유도
- 지역 유관기관·자원봉사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관련 행사를 지자체와 공동 개최하여 효율 극대화

5. 행정사항

- 각급기관(학교)별 「안전점검의 날」 운영 연간 계획 수립 : 매년 1월 말 까지
- 연간 계획에 의거 매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분기별 「안전점검의 날」 추진결과 제출 : 매월(3,6,9,12월) 10일까지 전자문서 제출
 - ※ 제출서식. 「안전점검의 날」 추진결과 **【별지 3】**
- 연도별 「안전점검의 날」 추진결과 제출 : 매년 12.31. 까지.
 - ※ 제출서식. 「안전점검의 날」 추진결과 **【별지 4】**

별지 1 '안전점검의 날' 월별 주요실천과제

월별	주요 실천과제	비 고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날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캠페인 실시 -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증가에 따른 화재예방 강화 - 대설피해 최소화를 위한 민·관 공동 대비체제 구축 	전국동시행사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빙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홍보 - 재난취약시기 인파밀집지역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빙기 안전점검 및 대규모 산불예방 홍보 -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시설, 스쿨존 안전점검 등 「어린이 안전 지키기 운동」 실시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 행락철 유원시설, 유도선 등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홍보 - 산불 등 건조한 계절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예방 강화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농민들의 각별한 경각심 고취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철 강풍, 폭우 등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 홍보 - 수해취약지역 점검 및 상습침수지역 예방조치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캠페인 및 안전점검 - 청소년 수련 시설, 계곡야영장, 해수욕장 및 각종 물놀이 시설 안전점검(내수면 유도선 사고) 	전국동시행사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속 - 폭염 및 태풍피해 대비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및 행동요령 홍보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석연휴 대비 백화점, 영화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캠페인 실시 - 가을 행락철 대비 유원시설, 유도선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 강화 	전국동시행사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풍철 산악사고 예방활동 및 가을철 산불방지 예방대책 강화 - 행락철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띠 착용 등 「안전운전 점수」 올리기 실천 운동 전개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강화 및 '비상구 찾기' 운동 전개 - 초겨울 난방기구 사용증가에 따른 화재예방 강화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증가에 따른 화재예방 강화 - 폭설설해 등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내 집앞 눈 치우기 운동」 등 전개 - 스키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홍보 추진 	전국동시행사

별지 2 소방안전체험관 · 이동안전체험차량 현황

□ 전국 소방안전체험센터 운영 및 건립 현황

○ 운영 중인 시설 : 4개소

① 서울(광나루)시민안전체험관 ('03. 3. 6개관, 서울어린이 대공원 내)



장 소	서울 광진구 능동 18번지(어린이대공원내)
건물규모	지하1/지상3층 연면적 5,742㎡ 부지 6,124㎡
사 업 비	시비 205억(시유지 활용)
주요시설	지진 폭풍우 피난체험 등 20개 코너
운영조직	서울 소방재난본부 8명, 시설위탁 6명
체험인원	1회당 약 2시간, 170여명, 일일 3회 운영 (총 510명) ※매주 화·목요일 직장인을 위한 야간운영 1회
이용금액	무료

②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08.12.29 개관)



장 소	대구 동구 용수동 89-13
건물규모	지하1/지상2층 연면적 5,833㎡ 부지 14,469㎡
사 업 비	303억(국비126.5, 지방비126.5, 성금50) 1차 : 250(국비100억, 지방비100억, 성금50억) 2차 : 53(국비26.5, 지방비26.5)
주요시설	지하철 · 생활 · 방재미래 등 3개 전시관
운영조직	대구소방안전본부 16명, 시설위탁 5명
체험인원	1회당 약 2시간, 200여명, 일일 18회 운영 (총 360명)
이용금액	무료

③ 서울보라매안전체험관 ('10. 5.25개관, 보라매공원 내)



장 소	동작구 신대방동 460번지 ('08.12~'10.4)
건물규모	지상3/지하1층 연면적 8,020.77㎡
사 업 비	시비 404억(특별교부세 10억 별도)
주요시설	코스형식의 연속적 재난시뮬레이션 체험
운영조직	서울소방재난본부 16명, 시설위탁 5
체험인원	1회당 약 2시간, 60여명, 일일 4회 운영 (총 240명)
이용금액	무료

④ 호남권 : 전라북도 119안전체험관



장 소	전북 임실군 이도리 473번지 일원
건물규모	지상3층 2동 부지 98,154㎡, 연면적 5,876㎡
사 업 비	221.53억(국비110, 도비111.53)
주요시설	체험관 2동, 체험마을, 챌린지하우스 구성
체험인원	1회당 약 2시간, 100여명, 일일 3회 운영(총 300명)
운영조직	전라북도 소방본부 17명, 시설위탁 6명
이용금액	2천원 ※ 단체(10인이상) 1,000원

※ 강원도 365세이프타운(지식경제부 폐광기금보조사업)



장 소	태백시 장성동 철암동 일원 3개지구
건물규모	부지 947,100㎡ / 건축연면적 25,745㎡
사 업 비	1,790억 원(기금 1,133, 도비 250 시비 407) ※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주요시설	재난체험+안전교육+ENT 등 복합화 3개 지구
운영조직	태백시
이용금액	22,000원 ※단체는 10% 할인

○ 건립 중인 시설 : 2개소

① 충남천안('14년 12월 완공예정) * 국고보조 '11년 5억, '12년 40억, '13년 65억

- 건립장소 : 충남 천안시 태조산 공원내 시유지 13,300㎡활용
- 규모(예정) :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5,620㎡/17개 체험시설

② 부산('15년 완공예정) * 국고보조 '12년 6.46억, '13년 84억, '14년 19.54억

- 건립장소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금강공원 내(부지 14,648㎡)
- 규모(예정) :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7,000㎡/22개 체험시설

○ 최근3년 체험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2011	2012	2013
계	1,392,191	415,714	445,471	531,006
서울 광나루체험관	476,530	162,468	162,674	151,388
서울 보라매체험관	438,270	144,952	145,356	147,962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383,893	108,294	137,441	138,158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	93,498			93,498

□ 전국 이동안전체험차량 현황

시·도	운영 대수	예약방법	신청부서	비고
계	24			
서울	3	전화	관할지역 소방서	서별순회
부산	2	인터넷	부산소방본부 홈페이지	
대구	2	전화	중부소방서 053-255-0190 서부소방서 053-353-9119	
인천	2	전화	본부, 관할지역 소방서	서별순회
광주	1	전화	광주소방학교 062-613-8974	
대전	1	전화	관할지역 소방서	
울산	1	인터넷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	남부소방서
세종	-	-	-	-
경기	3	전화	관할지역 소방서	남부2 북부1
강원	1	문서, 전화	본부 033-249-5146 원주소방서 033-769-1312	원주 소방서
충북	1	전화	관할소방서	본부
충남	2	신청서, 전화	관할소방서	홍성1 논산1
전북	1	전화	관할소방서	체험관 서별순회
전남	1	예약없음	화순소방서	연간계획에 의거 자체
경북	1	전화	본부 053-715-2146 관할지역 소방서	본부*전담직원2
경남	1	전화	경남소방본부 이선철 055-211-5384	
제주	1	전화	교육대 064-710-3567 관할지역 소방서	서별순회

○ 캠페인 현황

기관명	합계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학교 (초·중·고)		민간참여 (관계기관 합동 또는 학부모 참여 등)	
	기관·학교	인원	기관수	인원	학교수	인원	기관수	인원
총계								

○ 홍보 현황

구분	TV,유선방송 (회)	라디오 (회)	신문 (회)	기고 문	전광판(회)	입간판 현수막 (개)	전단지 홍보물 (매)	공 공 게시판 (회)	기타
기관									
학교									

5. 기관장 주요 활동상황

-
-

6. 수범사례 및 특기사항(자체 특수 시책 등)

(육하원칙, 사진첨부, 별지 작성 가능)

-
-

7. 주요활동 결과 사진 (캠페인, 시설안전 점검, 홍보활동 등)

▶ 사진설명 :

▶ 사진설명 :

※ 관련 사진, 언론보도 등 참고자료를 주요 행사 내용 하단에 필수 첨부(사진 및 그림삽입 시 이미지 크기는 100k 이내로 용량 축소 후 삽입)

안전점검의 날 수범사례

(기관명 :)

작성자 :

확인자 : 00학교장 (인)

개요(휴먼명조 18)

- 휴먼명조 16
- 휴먼명조 15

주요내용(휴먼명조 18)

- 휴먼명조 16
- 휴먼명조 15

주요성과(휴먼명조 18)

- 휴먼명조 16
- 휴먼명조 15

참고자료(사진·언론보도 등)

행사 장소(사진설명 등)	
사진	

- 홍보 현황
 - 주요 홍보 사항

구분	TV,유선방송 (회)	라디오 (회)	신문 (회)	기고 문	전광판 (회)	입간판 현수막 (개)	전단지 홍보물 (매)	공 공 게시판 (회)	기타
기관									
학교									

기관장 주요 활동상황

○

-

수범사례 및 특기사항

○

-

Ⅲ 문제점 및 개선대책

문제점

○

개선대책

○

※ 현행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향(관련법령, 해당조문, 개정방향 제시 등)

첨부. 주요활동 결과사진(분기별 사진첨부 서식활용)

지도

이덕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안전지원국장

정광연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재난예방과장

기획 및 편집

김상규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재난예방과 방재재난관리담당사무관

개발 및 집필

김진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재난예방과

박휘진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재난예방과

이승은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재난예방과

심보현 가남초등학교 행정실장

홍광표 포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서주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이창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문휘조 의정부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인쇄 및 발행 : 2014년 10월

발행처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재난예방과

연락처 : 031-820-0727